



온타리오 주 고령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안내서

ontario.ca/seniors



Premier of Ontario - Première ministre de l'Ontario



주수상의 메시지

온타리오 주정부를 대표하여, 매우 유용한 자원인 이 *온타리오 주 고령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안내서* 개정판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께 이 기회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전통적인 대중매체 및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우리 온타리오 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인구 고령화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온타리오 주의 경우, 2036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지만, 사실 이 고령자 세대야말로 세계 역사상 가장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인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건대, 명확하고 종합적인 계획 하에 우리 온타리오 주정부는 나날이 확대되어가는 이 소중한 인구, 우리 온타리오 주 고령자들의 여러 가지 필요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온타리오 주의 고령자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이 *온타리오 주 고령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온타리오 주의 고령자 인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권위 있는 자원으로, 이 업데이트된 안내서는 능동적 생활, 간병, 재정, 보건, 주택, 장기요양원, 안전, 교통 등에 관해 일목요연한 종합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협력자들과의 협력, 그리고 고령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저희는 우리 온타리오 주가 앞으로도 계속 북미에서 고령자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유용한 안내서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Kathleen Wynne(캐슬린 윈)
Premier(주수상)



Minister Responsible for Seniors - Ministre Responsable pour les personnes âgées



장관의 메시지

친구 여러분,

우리 온타리오 주 주민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20년 후에는 온타리오 주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보건의료 체계, 사회복지 서비스, 주택, 조세 등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기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고령자 인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인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자는 우리의 가족이요, 친구요, 이웃입니다. 고령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나날이 커져가는 고령자들의 여러 가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마다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주민, 단체, 정부, 기업, 넓은 의미의 비영리 부문 등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고령자 및 그 가족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온타리오 주정부는 나날이 커져가는 고령자들의 여러 가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명확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고령자 및 그 가족이 보다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의 미래가 친화적이고 안전하며 지원적인 것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온타리오 주 고령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안내서는 온타리오 주 주민이 그러한 미래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자원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내서에 소개된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여러분이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빕니다.

Mario Sergio(마리오 서지오)
Minister Responsible for Seniors(고령자 담당 장관)

온타리오 주 고령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안내서

Seniors' INFOnline

1-888-910-1999 – TTY: 1-800-387-5559

A Guide to Programs and Services for Seniors in Ontario(온타리오 주 고령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안내서)는 온타리오 주의 고령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안내서는 Ontario Seniors' Secretariat(온타리오 주 고령자총무처)이 제작하여 ServiceOntario Publications(서비스 온타리오 출판국)가 배포합니다.

안내서가 더 필요하면 ServiceOntario Publications를 통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전화: 1-800-668-9938, 웹사이트: www.publications.serviceontario.ca).

이 간행물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제안이 있으면 동봉된 상용 반송 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이 안내서에 기재된 정보는 2013년 1월 현재 유효한 것입니다.

Également disponible en français sous le titre Guide des programmes et services pour les personnes âgées de l'Ontario.

© Queen's Printer for Ontario, 2013

ISBN 978-1-4606-1686-4 (Print)

ISBN 978-1-4606-1660-4 (PDF)

4M/13



— 목차

1	능동적 생활	1
	지역사회 활동	1
	스포츠 및 여가활동	2
	여행	3
	취업	5
	평생교육	7
	자원봉사	8
	고령자의 공헌에 대한 인정	8
	신규이민자 서비스	11
	원주민 고령자	12
	동성애자,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고령자	13
	재향군인	13
2	간병	15
	간병인 세금공제	15
	고용 혜택	16
3	재정	18
	세금	18
	연금 및 기타 급여	20
	재정 계획	23
	재정 지원	24
	재향군인	25
4	보건	27
	일반 정보	27
	공공보건	28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OHIP - 온타리오 의료보험계획)	32
	Ontario Drug Benefit(ODB - 온타리오 의약품급여) 프로그램	34
	치과 진료	36
	Assistive Devices Program(보조기구 프로그램)	36
	앰블런스 서비스	37
	온타리오 주 Regional Geriatric Program(RGP - 지역 노인병 프로그램)	37
	정신건강 및 중독	38
	낙상 예방	40
	영양	41
	MediAlert® Safely Home®	42
	Finding Your Way(길 찾기)	42

	Community Support Services(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43
	원주민 고령자	46
	동성애자,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고령자	47
	재향군인	47
5	주택	48
	주택 개조	48
	재정 지원 프로그램	48
	주거 옵션	50
	저소득 고령자 주거 옵션	52
	비상 집세 지원	53
	임대주-세입자 관계	54
	원주민 고령자	54
6	장기요양원	56
	일반 정보	56
7	안전 및 보안	61
	소비자 정보 및 보호	61
	비상 서비스 및 공공안전	65
	법률 문제	67
	생의 말년	73
8	교통	79
	운전	79
	운전의 대안	81
	자동차 매매	82
	대중교통	82
	재향군인	83
9	주요 연락처	84
10	온타리오 주정부 발급 신분증	87
	주소 변경	88
11	색인	89

1 능동적 생활

지역사회 활동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 활동, 여가활동 및 사회 활동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관내 단체 및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커뮤니티 센터 및 고령자 센터
- 서비스 클럽(YMCA, 로터리클럽, Royal Canadian Legion(캐나다 재향군인회) 등)
- 문화 센터
- 교회/사원
- 시청의 Parks and Recreation Department(공원 및 여가활동 관리국)

2-1-1

www.211ontario.ca

공공도서관

온타리오 주의 광범위한 공공도서관 및 원주민도서관 서비스는 포용적이고 친절하며 장애인 친화적인 환경에서 고령자 및 그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서관은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대출해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 및 교육, 참고 자료, 강습회 등을 제공합니다.

Ontario Library Services - North(온타리오 도서관 서비스 - 북부)

1-800-461-6348

www.olsn.ca

Southern Ontario Library Service(온타리오 주 남부 도서관 서비스)

1-800-387-5765

www.sols.org

Older Adult Centre(노인센터)

Older Adult Centre(‘Seniors’ Centre’ 또는 ‘Elderly Persons Centre’라고 불리기도 함)는 관내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노인센터는 고령자를

위해 특화된 각종 사회 활동, 학습 및 교육 기회,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Older Adult Centres' Association of Ontario(온타리오 노인센터협회)
1-866-835-7693
www.oacao.org

Elderly Persons Centre를 찾아보려면 시청에 문의하거나 2-1-1로 전화하십시오.

스포츠 및 여가활동

신체적으로 활발하게 생활하면 건강 및 체력 증진, 웰빙 등 여러 가지 보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전한 노화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신체 활동을 늘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조언을 찾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Physical Activity Tips for Older Adults(노인을 위한 신체활동 조언)
www.publichealth.gc.ca/paguide

Canadian Physical Activity Guidelines(캐나다 신체활동 지침)
www.csep.ca/guidelines

Ontario Senior Games(온타리오 고령자체전)

‘Ontario 55+ Summer Games(온타리오 주 55세 이상 하계체전)’ 및 ‘Ontario 55+ Winter Games(온타리오 주 55세 이상 동계체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온타리오 주 고령자체전은 주 차원에서 열리는 다종목 고령자 체육대회입니다. 2년마다 열리는 이 체전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참가할 수 있으며, 건전하고 능동적인 생활양식을 장려하는 환경에서의 상호교류가 그 목적입니다.

Ontario Seniors Games Association(온타리오 고령자체육협회)
1-800-320-6423
www.ontarioseniorgames.ca

Ontario Parks(온타리오 공원관리국)

온타리오 주의 주립공원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신체장애인에게 캠핑료 및 주간사용료를 할인해줍니다. 많은 온타리오 주 주립공원이 샤워 시설, 화장실, 캠핑장, 관광안내소 등의 ‘장벽 없는’ 시설을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OntarioParks.com에서 ‘Park Locator(공원 찾기)’ 를 클릭하면 장벽 없는 시설이 갖추어진 공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캠핑장이 캠핑카를 수용하며, 전기 및 트레일러 전용 오물폐기장이 제공되는 곳도 있습니다.

1-888-ONT-PARK (1-888-668-7275)
TTY(청각장애이용 전화): 1-866-686-6072
www.ontarioparks.com

낚시 및 사냥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장애가 있는 캐나다 주민은 Outdoors Card (야외활동카드) 또는 낚시면허 없이도 온타리오 주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획 및 점유 제한 등의 모든 규정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사냥을 하려면 Outdoors Card를 발급받아야 하며, 사냥하고자 하는 동물 또는 동물군에 해당하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사냥을 할 때는 항상 면허 및 확인증을 소지해야 하며, Conservation Officer(공원경찰관)이 요구할 경우 면허를 제시해야 합니다.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천연자원부)
Outdoors Card Centre(야외활동카드센터)
1-800-387-7011
www.ontario.ca/outdoorscard

여행

온타리오 주 내 여행

온타리오 주의 여러 관광 명물이 고령자에게 할인 요금을 제공하며, 고령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의 관광 명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관광 일정을 짜려면 Ontario Travel Information Centre(온타리오 관광안내소)를 방문하십시오.

Ontario Travel(온타리오 여행)
1-800-ONTARIO (1-800-668-2746)
www.ontariotravel.net

온타리오 주 외 또는 캐나다 국외 여행

일시적으로 온타리오 주 또는 캐나다를 떠나 있을 경우, OHIP(온타리오 의료보험계획)가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외 지역이되 캐나다 국내를 여행하면서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1년 내에 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원본을 관내 OHIP 사무소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국외 여행을 할 경우, OHIP는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예기치 않은 응급 상태, 질병, 질환 또는 상해에 대한 응급 병원 및 의료 서비스의 경우 균일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OHIP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면 온타리오 주 외 및 캐나다 국외 여행에 적용되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Ontario Drug Benefit Program(온타리오 의약품급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최고 100일치의 처방의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외 지역으로의 장기 출타로 인하여 100일치의 처방의약품이 더 필요할 경우, 약사에게 출타 사실 확인서(본인 작성)를 제출하거나, 100-200일 동안 온타리오 주 외 지역으로 출타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여행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추가적인 100일치 의약품이 처방전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보건부)
Service Support Contact Centre(서비스지원 콜센터)
1-866-532-3161
TTY: 1-800-387-5559
www.ontario.ca/ruq

OHIP 또는 Ontario Drug Benefit Program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본 안내서의 '보건' 단원을 참고하십시오.

Retirement Abroad(해외 은퇴)

연방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외교통상부)의 간행물 'Retirement Abroad: Seeing the Sunsets(해외 은퇴: 일몰 보기)'는 특정 계절에만, 또는 영구적으로 외국에서 은퇴 생활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Enquiries Service - Foreign Affairs Canada(문의 서비스 - 캐나다 외교부)
1-800-267-8376
www.travel.gc.ca/travelling/publications/retirement-abroad

Canadian Snowbird Association(캐나다 피한객협회)

Canadian Snowbird Association은 모든 캐나다인 여행자의 권리 및 특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는 캐나다의 공식 협회입니다.

1-800-265-3200
www.snowbirds.org

취업

2006년에 정년퇴직 제도를 철폐하는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공정성과 선택권이 향상되어, 이제 고령자도 퇴직 여부 및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mployment Ontario(온타리오 고용)

Employment Ontario는 온타리오 주 주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취업 훈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찾기 쉽게 만들어주는 통합 취업 및 훈련 네트워크입니다. 정보 및 연계 서비스가 25개 국어로 제공됩니다.

Employment Ontario Contact Centre(온타리오 고용 콜센터)

1-800-387-5656

TTY: 1-866-533-6339

www.ontario.ca/employment

- **Employment Service(취업 지원 서비스)**
Employment Service의 목적은 온타리오 주 주민이 구직 및 직업 유지, 훈련 신청, 커리어 계획 등에 필요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Targeted Initiative for Older Workers(고령 근로자 지원 제도)**
이 제도는 지역 경제에 변화가 발생할 때 만 55-64세의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률이 높거나 단일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인구 250,000 이하의 특정 지역사회에서만 시행됩니다. 지정된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자 목록은 웹사이트 www.ontario.ca/ru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Ontario Self-Employment Benefit Program(온타리오 자영업급여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현재 Employment Insurance(고용보험) 수혜 자격이 있거나 최근에 자격이 있었던 실직자가 창업을 할 때 소득 및 창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 **Ontario Job Creation Partnerships(온타리오 고용 창출 협력 제도)**
이 제도는 Employment Insurance 수혜 자격이 있거나 Employment Insurance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업 경력 취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취업 전망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Second Career(제2의 직업)**
Second Career의 목적은 정리해고를 당한 적격 근로자가 노동시장 전망이 입증된 직종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업료, 교재, 교통, 기타 훈련 관련 비용에 대해 최고 \$28,000를 지원합니다.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Ontario Job Bank(온타리오 직업은행)

Ontario Job Bank는 모든 캐나다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전국 구인 광고를 종합적으로 게시하는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입니다.

www.jobbank.gc.ca

Ontario WorkinfoNet (OnWIN - 온타리오 직업정보망)

OnWIN은 온타리오 주 주민에게 현재 유효한 직업 및 자원봉사 기회와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영어 및 프랑스어로 된 무료 온라인 인터넷 디렉터리입니다. 고령자는 자원봉사, 취업 및 훈련 기회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OnWIN을 이용하여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www.onwin.ca

Ontario Skills Passport(온타리오 기술 패스포트)

영어 및 프랑스어로 제공되는 이 무료 웹사이트는 필수적 기술 및 근무습관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지방 및 주 차원의 교육훈련, 자원봉사 및 노동시장 기회에 관한 현재 유효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ontario.ca/skillspassport

Employment Standards Act(ESA - 고용기준법)

모든 온타리오 주 주민은 직장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SA는 고용주 및 고용인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온타리오 주 내에서 고용 중인 사람은 ESA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큼니다.

Employment Standards Information Centre(고용기준 정보센터)

1-800-531-5551

TTY: 1-866-567-8893

www.ontario.ca/employmentstandards

해외에서 훈련받은 전문직종자

온타리오 주는 해외에서 훈련받은 전문직종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www.settlement.org

Compassionate Care Benefit Program(가족간병급여 프로그램), Family Medical Leave(가족의료휴가), Personal Emergency Leave(개인비상휴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본 안내서의 ‘간병’ 단원을 참고하십시오.

평생교육

평생교육 및 원격교육

온타리오 주의 여러 교육청,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이 평생교육 및 원격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령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교육청: www.ontario.ca/rus
- 종합대학: www.ontario.ca/education-and-training/ontario-universities
- 전문대학: www.ontario.ca/education-and-training/ontario-colleges
- Ontario Learn: www.ontariolearn.com
- 원격교육: www.canlearn.ca/eng/preparing/find/ded.shtml

Third Age Network(제3기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학습 체험을 공유하는 자율적 고령자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www.thirdagenetwork.ca

Independent Learning Centre(독립학습센터)

이 센터는 원격교육과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GED - 일반교육개발) 시험을 제공합니다. GED 시험은 Ontario Secondary School Diploma(온타리오 주 고등학교 졸업장)를 취득하는 대안적 방법입니다.

1-800-387-5512
www.ilc.org

컴퓨터 교육

공공도서관에서 초보자 및 중/상급자 과정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과정이 무료입니다.

2-1-1
www.211ontario.ca

Older Adult Centre는 컴퓨터 교육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센터를 찾아보려면 1-866-835-7693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www.oacao.org를 방문하십시오.

Lifelong Learning Plan(평생교육계획)은 본인, 배우자 또는 사실혼자의 풀타임 교육비 지출을 위해 RRSP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본 안내서의 '재정' 단원을 참고하십시오.

자원봉사

Ontario Volunteer Centre Network(온타리오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

이 단체는 자원봉사자 및 기관의 규합을 돕고 온타리오 주의 모든 Volunteer Centre(자원봉사센터)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905-238-2622
www.ovcn.ca

Volunteer Canada(캐나다 자원봉사)

영어 및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이 비영리단체는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공로를 인정함으로써 캐나다 전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합니다.

1-800-670-0401
www.volunteer.ca

다른 사람들의 소득신고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Canada Revenue Agency(캐나다 국세청)가 운영하는 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지역사회 자원봉사 소득세 프로그램)을 고려해보십시오. 자세히 알아보려면 본 안내서의 '재정' 단원을 참고하십시오.

고령자의 공헌에 대한 인정

치하 메시지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고위 인사의 치하 메시지를 요청하여 특별한 일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Her Majesty The Queen(여왕 폐하) - 만 100세 이상의 생일을 맞는 캐나다 국민 및 결혼 60주년 이상(5년 단위)을 맞는 부부

Rideau Hall - Anniversary Section(리도 홀 - 기념일부)
1-800-465-6890
www.gg.ca (> FAQ)

The Governor General of Canada(캐나다 총독) - 만 90세 이상(5년 단위)의 생일을 맞는 캐나다 국민 및 결혼 50주년 이상(5년 단위)을 맞는 부부.

Rideau Hall - Anniversary Section(리도 홀 - 기념일부)
1-800-465-6890
www.gg.ca (> FAQ)

The Lieutenant Governor of Ontario(온타리오 주 총독) - 만 90세 이상의 생일을 맞는 온타리오 주 주민 및 결혼 50주년을 맞는 부부.
www.ontario.ca/rut

The Prime Minister of Canada(캐나다 수상) - 만 65세 이상(5년 단위)의 생일을 맞는 캐나다 국민 및 결혼 25주년 이상(5년 단위)을 맞는 부부.

Executive Correspondence Services(정부 고위지도부 통신 서비스)
Congratulatory Messages(치하 메시지)
613-941-6901
www.pm.gc.ca/eng/greetings.asp

The Premier of Ontario(온타리오 주 수상) - 만 80세 이상의 생일을 맞는 온타리오 주 주민 및 결혼 40주년을 맞는 부부
www.ontario.ca/wp65

Member of Parliament(국회의원) 및/또는 Member of Provincial Parliament(주의원) - 각종 기념일. 자세히 알아보려면 해당 지역 MP(국회의원) 또는 MPP(주의원)의 선거구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해당 지역 MPP 찾기:
Elections Ontario
1-888-668-8683
www.elections.on.ca (> Find Your Electoral District)

해당 지역 MP 찾기:
Elections Canada
1-800-463-6868
TTY: 1-800-361-8935
www.elections.ca (> Voter Information Service)

고령자 표창

Honours and Awards Secretariat(상훈국)은 온타리오 주의 훈장 및 표창 제도, 특별 기념 및 축하를 관리합니다.

고령자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표창은 다음과 같습니다:

- **Senior Achievement Awards(고령자공적상):**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만 65세 이상(65세 불포함)의 온타리오 주 주민에 대한 표창.
www.ontario.ca/uj97
- **Senior of the Year Award(올해의 고령자상):** 지역사회의 사회 생활, 문화 생활 또는 시민 생활을 풍요롭게 한 만 65세 이상(65세 불포함)의 개인에 대한 온타리오 주 각 지방자치체의 표창.
www.ontario.ca/ruw

각종 연례 행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별한 날을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십시오.

Seniors' Month(고령자의 달) - 자신의 가족, 지역사회, 주 및 국가에 대한 수많은 고령자의 공헌을 인정하고 기념하는 달로서 온타리오 주에서는 매년 6월입니다.

1-888-910-1999

TTY: 1-800-387-5559

www.ontario.ca/seniorsmonth

National Seniors Day(전국 고령자의 날) - 10월 1일은 우리나라의 건립과 발전에 이바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고령자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www.seniors.gc.ca

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세계 고령자의 날) - 전세계 고령자들의 중요한 공헌을 인정하는, 유엔이 지정한 날로서 역시 10월 1일입니다.

www.un.org/en/events/olderpersonsday

신규이민자 서비스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에서 이민자 고령자가 가장 많은 주입니다. 지역사회마다 이민자 고령자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ewcomer Settlement Program(신규이민자 정착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이민자의 온타리오 주 정착 및 통합을 돕는 여러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에 주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은 신규이민자를 언어 교육, 직업 훈련, 각종 지역사회 서비스(보건의료 등)와 연계해줍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며 흔히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www.ontario.ca/bd2s

Settlement.Org

이 웹사이트는 신규이민자의 온타리오 주 정착을 돕기 위한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주제는 취업, 교육, 주택, 보건의료, 여가활동 등입니다. 일부 정보는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2-1-1

www.settlement.org

Ontario Immigration Portal(온타리오 이민 포털)

이 포털 사이트는 이민 신청을 하기 전부터 온타리오 주에 도착한 후까지 온타리오 주 이민자로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ontarioimmigration.ca

영어/프랑스어 배우기

각 지역 교육청에서 ESL(영어) 또는 FSL(프랑스어) 교실을 제공합니다. 초급에서 고급까지 다양한 등급의 언어 교육이 제공됩니다. 고령자를 위한 교실을 제공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관내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www.ontarioimmigration.ca를 방문하십시오.

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LINC - 캐나다 신규이민자 언어교육)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가까운 무료 LINC 교실을 찾아보려면 관내 이민자 서비스 기관 또는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캐나다 이민부)에 문의하십시오. LINC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캐나다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1-888-242-2100
TTY: 1-888-576-8502
www.servicesfornewcomers.cic.gc.ca

일부 종합대학, 전문대학, 사립 언어학원 및 지역사회 단체도 언어 교실을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해당 학교, 학원 및 단체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원주민 고령자

Aboriginal Artists in Schools(원주민 예술가의 학교교육 참여)

이 프로그램은 Ontario Arts Council(온타리오 예술진흥원)의 Artists in Education(예술가의 교육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원주민 예술가 및 원로가 온타리오 주의 각급 학교에서 예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Ontario Arts Council
1-800-387-0058
www.arts.on.ca

Elder and Youth Legacy Program(원로 및 청소년 문화유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모든 종류의 현대 및 전통 예술 활동에 있어서 특정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원주민 원로 및 청소년과 협력하기를 원하는 원주민 단체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원주민 예술 단체는 원주민 원로들이 각종 예술 활동의 문화적 유산을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Canada Council for the Arts(캐나다 예술진흥원)
1-800-263-5588
TTY: 1-866-585-5559
www.canadacouncil.ca/grants/aboriginal

동성애자,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LGBT) 고령자

The 519 Church Street Community Centre(처치스트리트 519번지 커뮤니티 센터)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이 커뮤니티 센터는 만 50세 이상(50세 불포함)의 LGBT 남녀를 대상으로 주례 무예약 방문 프로그램 및 월례 독서 클럽을 제공하는 'Olde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LGBT 고령자)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16-392-6874
www.the519.org

Senior Pride Network(고령자 자부심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는 토론토 및 캐나다 전국의 만 50세 이상 LGBT 고령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개인, 단체 및 지역사회 공동체들의 연합입니다.

c/o The 519 Church Street Community Centre
416-392-6874
www.seniorpridenetwork.com

재향군인

Royal Canadian Legion(RCL - 왕립 캐나다 재향군인회) 온타리오 주 사령부

RCL 온타리오 주 사령부 산하에는 주 전역에 400여 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RCL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리는 일에 주력하는 한편 재향군인 및 그 부양가족, 그리고 지금도 캐나다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핍니다.

905-841-7999
www.on.legion.ca

Royal Canadian Legion(RCL) 매니토바 주 및 온타리오 주 북서부 사령부

RCL 매니토바 주 및 온타리오 주 북서부 사령부 산하에는 온타리오 주 북서부에 있는 30개 지부를 포함하여 150여 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204-233-3405
www.mbnwo.ca

The Memory Project(기억 프로젝트)

Historica-Dominion Institute(히스토리카-도미니언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Memory Project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현대까지의 캐나다 군대의 군사적 개입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 국립 이중언어 기록보관소에는 우리의 봉사와 희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술 인터뷰, 디지털 인공물, 기념물 등 전례 없이 희귀한 각종 기록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Veterans' Speakers Bureau(재향군인연사단)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여러분의 거주지 관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체험담을 들려줄 수 있도록 동 연구소가 교실 방문을 기획해줄 것입니다.

The Historica-Dominion Institute
1-866-701-1867
www.thememoryproject.com

2 간병

간병인은 신체적, 인지적 또는 정신건강적 질환이 있는 가족 및 친구를 지속적으로 보살피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병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오늘날의 간병인은 과거에 비해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복잡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인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이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간병하는 가족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되도록 일찍 그 가족과 의논하고, 법적 및 재정적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고령자 및 노약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보건의료 서비스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Community Care Access Centre(CCAC -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센터)와 Community Support Services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거주지 관내 CCAC는 가정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게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가정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및 주거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ontario.ca/rux를 방문하십시오.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면 본 안내서의 '보건' 단원을 참고하십시오.

간병인 세금공제

Disability Tax Credit(장애세금공제) 및 Medical Expense Tax Credit(의료비세금공제)에 의해 '간병인/부양자'에게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이 불가능한 이 세금공제는 간병인이 납부해야 할 연방세 또는 주세 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또한, 간병이 필요한 적격 가족을 위해 간병인이 주택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Caregiver Amount(간병인 비용)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Disability Tax Credit 및 Medical Expense Tax Credit와는 달리, Caregiver Amount는 피간병인이 배우자 또는 사실혼자일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환급불가 세금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Family Caregiver Amount(가족간병인 비용) 명목으로 \$2,000를 추가로 청구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Canada Revenue Agency
1-800-959-8281
TTY: 1-800-665-0354
www.cra-arc.gc.ca/disability

세금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본 안내서의 '재정' 단원을 참고하십시오.

고용 혜택

Compassionate Care Benefit Program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보살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의 하나입니다. 간병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정서적, 신체적 및 재정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힘들 때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과 가족을 보살피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족간병급여는 26주 내에 사망할 위험이 높은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간병 또는 부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휴직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방 Employment Insurance 급여입니다. 수혜 자격에 부합되는 개인에게는 최고 6주 동안 가족간병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Service Canada(서비스 캐나다)
1-800-206-7218
TTY: 1-800-926-9105
www.sdc.gc.ca/en/ei/types/compassionate_care.shtml

Family Medical Leave

간병인이 가족간병급여 수혜 자격이 있더라도, 휴직 기간 동안 고용주가 간병인의 일자리를 유지해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온타리오 주 가족의료휴가는 26주 내에 사망할 위험이 높은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26주의 기간 동안 최고 8주간의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휴가는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보호되기는 하지만 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연방 가족간병급여 수혜 자격이 없을 경우에도 무급 가족의료휴가가 허용될 수는 있습니다.

Employment Standards Information Centre
1-800-531-5551
TTY: 1-866-567-8893
www.ontario.ca/ruy

Personal Emergency Leave

특정 고용인은 매년 최고 10일간의 개인비상휴가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보호되기는 하지만 무급인 이 휴가는 본인의 질병, 상해 및 응급 의료, 또는 가족(간병/부양이 필요한 가족 등)의 사망, 질병, 상해, 응급 의료 및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낼 수 있습니다.

Employment Standards Information Centre
1-800-531-5551
TTY: 1-866-567-8893
www.ontario.ca/ruz

3 재정

세금

고령자는 신고할 소득이 없더라도 매년 개인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이유 중 몇 가지 예입니다:

-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GST/HST - 물품용역세/통합판매세) 공제 - 분기별로 지급되는 면세 급여로서 납세자가 납부하는 GST 또는 HST를 전액 또는 일부 상쇄해줍니다.
- 환급가능 세금공제 또는 보조금 - 소득이 전혀 없거나 납부한 세금이 전혀 없을 경우에도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Old Age Security(고령보장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소득보장보조금), Allowance(배우자수당), Allowance for the Survivor (유족수당) 등, 소득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갱신되는 연금 제도.

이 밖에도 고령자를 위한 정부 소득 보조 제도가 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제도가 소득신고서 상의 소득을 바탕으로 수혜 자격을 판정합니다. 그러므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급여를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Canada Revenue Agency (CRA)
1-800-959-8281
TTY: 1-800-665-0354
www.cra-arc.gc.ca

소득신고

소득신고는 종이에 인쇄된 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소득신고서를 사용할 경우, 소득 및 각종 공제가 명시된 명세서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하며, 참고용으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소득신고를 할 경우에는 NETFILE(넷파일)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 패키지는 Canada Post(캐나다 체신부) 산하 우체국 및 Service Canada 사무소에서 구하거나, CRA 웹사이트 www.cra-arc.gc.ca에서 다운로드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환급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CRA는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이와 반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My Payment(마이 페이먼트)'

라는 CRA의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종이에 인쇄된 소득신고서를 제출할 때 Receiver General(캐나다 세입징수관)을 수취인으로 한 일반 수표 또는 송금수표를 신고서 맨앞에 첨부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표를 보낼 경우에는 수표 뒷면에 본인의 Social Insurance Number(SIN - 사회보장번호)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Canada Revenue Agency

Telerefund(세금 환급 안내 전화): 1-800-959-1956

Payment Arrangements(세금 납부 조정): 1-888-863-8657

TTY: 1-800-665-0354

유산집행인은 망자의 소득신고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본 안내서의 ‘안전 및 보안(생의 말년)’을 참고하십시오.

‘Learning About Taxes(세금 공부)’ 교실

이 무료 온라인 강좌는 기본적인 소득세 및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이 강좌에 접속하려면 웹사이트 www.cra-arc.gc.ca/educators를 방문하십시오.

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소득세 프로그램)

소득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Canada Revenue Agency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들과 협력하여, 간단한 세금 문제로 소득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적격 저소득자를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줍니다. 소득세에 관한 기초적 지식이 있고 이 프로그램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해당 지역사회 내 서비스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Canada Revenue Agency

1-800-959-8281

TTY: 1-800-665-0354

www.cra-arc.gc.ca/volunteer

온타리오 주 세금공제 및 급여

Healthy Homes Renovation Tax Credit(주택개조세금공제) - 이 세금공제는 집을 더 안전하고 장애인 친화적으로 개량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고령 주택소유자 및 임대주택 세입자, 고령자 가족/친척과 동거하는 주택소유자 등입니다. 적격 비용의 예를 들자면 장애인용 샤워 시설

(휠인 또는 워크인 샤워 시설), 욕실 안전손잡이 및 난간, 높이를 낮춘 주방 카운터 또는 찬장 등입니다.

Ontario Ministry of Finance(온타리오 주 재무부)
1-866-668-8297
www.ontario.ca/healthyhomes

저소득/중소득 고령자는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Ontario Trillium Benefit (OTB - 온타리오 트릴리엄급여)** - OTB는 Ontario Sales Tax Credit(온타리오 판매세공제), Ontario Energy and Property Tax Credit(온타리오 에너지재산세공제) 및 Northern Ontario Energy Credit (온타리오 주 북부 에너지세공제)가 결합된 것입니다. OTB는 대부분의 수령자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1-877-627-6645
www.ontario.ca/trilliumbenefit
- **Ontario Senior Homeowners' Property Tax Grant(온타리오 고령주택소유자 재산세보조금)**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로서 수혜 자격에 부합될 경우 가구당 최고 \$500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1-877-627-6645
www.ontario.ca/seniortaxgrant

간병인은 Tax Credit for Caregivers(간병인세공제) 및 기타 급여에 대한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본 안내서의 '간병' 단원을 참고하십시오.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려면 본 안내서의 '주택' 단원을 참고하십시오.

연금 및 기타 급여

Old Age Security (OAS) 제도 또는 Canada Pension Plan (CPP - 캐나다 연금계획)에 대해 알아보려면 Service Canada에 문의하십시오.

Service Canada에 전화할 때 본인의 OAS 또는 CPP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또는 Old Age Security 카드 번호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급여가 매월 은행 계좌에 자동이체되도록 하려면 전화할 때 은행 계좌 번호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급여 수표 하단에 적혀 있습니다. 보통예금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거래 은행에 문의하십시오.

Service Canada
1-800-277-9914
TTY: 1-800-255-4786
www.servicecanada.gc.ca

Old Age Security (OAS)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18세가 된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을 경우, 적격 캐나다 시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OAS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지 않아도 기본 OAS 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저소득 고령자는 만 60세가 되면 다른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한 외국에서 거주했거나 근무했을 경우, 캐나다 또는 해당 국가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장의 'International Benefits(국제급여)' 단원을 참고하십시오.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캐나다에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자로서 OAS 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 GIS 수혜 자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GIS 급여액은 본인의 연소득 또는 본인 및 배우자/사실혼자의 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급여는 신청해야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은 매년 4월 30일까지 소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갱신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llowance 및 Allowance for the Survivor

본인이 GIS를 수령하고 있고 배우자/사실혼자(동성 또는 이성)가 만 60-64 세일 경우, 배우자/사실혼자는 Allowan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llowance for the Survivor는 만 60-64세의 과부 또는 홀아비가 신청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기타 급여

이 밖에도 경우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제도의 수혜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급여도 있고 재향군인 등의 특수 집단을 위한 급여도 있습니다. 본인이 특정 제도에 대한 수혜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Service Canada에 문의하십시오.

Service Canada
1-800-277-9914
TTY: 1-800-255-4786
www.servicecanada.gc.ca

Guaranteed Annual Income System(GAINS - 연소득보장제도)

GAINS는 온타리오 주의 적격 고령자에게 최소 소득을 보장해주는 주정부 제도입니다. 수혜 대상은 온타리오 주 주민으로서 OAS 및 GIS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총소득이 주정부가 보장하는 수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Service Canada
1-800-277-9914
TTY: 1-800-255-4786
www.servicecanada.gc.ca

Ministry of Finance
1-866-ONT-TAXS (1-866-668-8297)
TTY: 1-800-263-7776
www.ontario.ca/gains

Canada Pension Plan (CPP) 퇴직연금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18세 불포함)의 근로자는 대부분 CPP 기여금을 납부합니다. 본인과 고용주가 기여금을 절반씩 납부합니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합니다. CPP 급여는 신청해야 지급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 65세가 되었다고 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CPP 급여는 경우에 따라 이르게는 만 60세 때부터 지급될 수 있으며, 본인이 선택할 경우 가장 늦게는 만 70세 때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액은 본인이 그동안 기여한 금액 및 기간, 급여를 수령하기 시작한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CPP 급여에 의한 소득은 소득신고서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Service Canada
1-800-277-9914
TTY: 1-800-255-4786
www.servicecanada.gc.ca

Disability Benefits(장애급여)

만 65세 미만의 CPP 기여자로서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Canada Pension Plan Disability Benefits 제도에 의해 매월 지급되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Survivor Benefits(유족급여)

CPP 유족급여는 사망한 기여자의 유산, 생존 배우자/사실혼자(동성 또는 이성) 및 피부양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사망급여는 사망한 CPP 기여자의 유산 또는 유산상속인에게 지급되는 1회성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기여자의 생존 배우자/사실혼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자녀급여는 사망한 피부양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연금 공유

만 60세 이상으로서 동거하고 있고 두 사람 모두 CPP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부부(동성 또는 이성 배우자/사실혼자 포함)는 CPP 퇴직급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공유할 경우, 고령 부부가 납부하는 개인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Benefits

이 제도에 따라, 외국에서 거주했거나 근무한 적격 개인 또는 그 적격 개인의 유족(생존 배우자/사실혼자 및 자녀)에게 퇴직급여, 장애급여 또는 유족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1-800-454-8731

Employment Insurance (EI) 급여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자 할 경우, 캐나다의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EI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 자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EI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복귀하여 EI가 적용되는 근로 시간을 축적하여 EI 급여 수혜 자격을 충족할 경우, EI 급여에서 연금소득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Service Canada

1-800-206-7218

TTY: 1-800-529-3742

www.servicecanada.gc.ca

재정 계획

누구나 재정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늦지 않습니다. 좋은 계획이 되려면 현재 및 미래의 생활비, 소득원, 재산, 세금 계획, 보험의 필요, 투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가이드를 찾아보거나 공인 재정설계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고령자 재정 계획 카운슬러는 만 50세 이상의 일반인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RRSP - 공인퇴직금적립계획) 및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RRIF - 공인퇴직소득기금)

많은 사람이 RRSP에 적금을 부어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RRSP 기여금은 세금공제 대상이며, RRSP에 의한 이자소득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RRSP 인출을 통한 결제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에 의해, 만 71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 이후부터는 RRSP를 계속 보유할 수 없습니다. RRIF는 퇴직 후에 소득을 제공하는 기금입니다. RRIF는 RRSP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신탁회사, 은행 등과 계좌주 사이의 협약입니다.

Tax-Free Savings Account(TFSA - 면세저축예금계좌)

이 특이한 은행 계좌는 평생 동안 면세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매년 TFSA에 연간 상한액만큼의 저축을 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상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저축했을 경우에는 모자란 만큼의 금액을 당해 연도에 추가로 없어 저축할 수 있습니다. TFSA에 의한 소득이 있거나 TFSA에서 인출한 금액이 있더라도 OAS, GIS 또는 EI 급여 등, 소득을 기준으로 한 급여 및 세금공제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www.cra.gc.ca/tfisa를 방문하십시오.

Lifelong Learning Plan(평생교육계획)

이 계획은 RRSP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사실혼자의 교육훈련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한 자금을 최고 10년에 걸쳐 RRSP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만 71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합니다.

www.cra-arc.gc.ca

재정 지원

Ontario Works(온타리오 워크스)

수혜 자격에 부합될 경우, Ontario Works는 식료품비, 집세 등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가족수, 소득, 재산 및 주거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의 거주지 관내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취업지원 및 사회복지 서비스) 사무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www.ontario.ca/ru1

Home and Vehicle Modification Program(주택 및 자동차 개조 프로그램)

Ontario March of Dimes(온타리오 마치 오브 다임스)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이동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이 자택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주택 및 자동차 개조 비용을 지원합니다.

Ontario March of Dimes
1-877-369-4867 (접수 카운슬러와 통화하려면 '2'를 누르십시오)
www.marchofdimes.ca

재향군인

장애연금 및 포상

Veterans Affairs Canada(캐나다 보훈처)는 수혜 자격이 있는 재향군인 및 기타 적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합니다. Merchant Navy(상선단), Canadian Forces(캐나다 국군),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캐나다 왕립 기마경찰대) 등에서의 복무와 관련된 장애, 그리고 전시에 또는 Special Duty/Operational Area(특수임무/작전지역)에서 캐나다 국군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업무와 관련된 장애에 대해 장애연금 및 포상이 지급됩니다.

Veterans Affairs Canada
1-866-522-2122
www.veterans.gc.ca

Bureau of Pensions Advocates(연금변호단)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 Veterans Affairs Canada 산하 전국 조직은 자신의 장애급여 신청에 대한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 재향군인에게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77-228-2250

War Veterans Allowance(참전용사수당)

이 수당은 제2차 세계대전 또는 6.25전쟁에 참전한 적격 저소득 참전용사에게 지급됩니다. 사망한 참전용사 또는 민간인이 수혜 자격에 명시된 참전 복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족(생존 배우자/사실혼자 및 고아)도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Veterans Affairs Canada
1-866-522-2122
www.veterans.gc.ca

온타리오 주 *Soldiers' Aid Commission*(군인원조위원회)

이 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또는 6.25전쟁 당시 캐나다 또는 해외에서 입대 및 복무했고 현재 온타리오 주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군 및 연합군 참전용사와 그 배우자 또는 생존 피부양 자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특정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12개월마다 한 번씩 1회성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보건 관련 물품(보청기, 의치, 안경 등) 구매, 주택 보수, 이사 비용 또는 가구 구매, 보조기구(휠체어, 휠체어 승강기 등) 구매 등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Royal Canadian Legion - Ontario Provincial Command
905-841-7999
www.on.legion.ca

Veterans Affairs Canada
1-866-522-2122
www.veterans.gc.ca

Benevolent Funds(자선기금)

Benevolent Funds는 참전용사, 재향군인 및 그 피부양 가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Veterans Affairs Canada 카운슬러 또는 해당 주의 Royal Canadian Legion - Provincial Service Officer(주 서비스 담당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기본적 생활비(음식, 주거 및 의료)에 대한 것이며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Royal Canadian Legion - Ontario Provincial Command
905-841-7999
www.on.legion.ca

Veterans Affairs Canada
1-866-522-2122
www.veterans.gc.ca

4 보건

일반 정보

누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즉시9-1-1로 전화하십시오.

Telehealth Ontario(텔레헬스 온타리오)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제공되는 이 무료 서비스는 비밀리에 보건 관련 조언 및 일반 보건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공인간호사와 연결해줍니다. 공인간호사는 여러분의 증상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가치료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진찰을 받아볼 것을 권하거나, 가까운 지역사회 자원을 소개해줄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제공되며, 기타 언어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통역 서비스,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직통 TTY 번호가 제공됩니다.

1-866-797-0000

TTY: 1-866-797-0007

www.ontario.ca/ru2

Community Care Access Centre (CCAC)

CCAC는 가정 및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영리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입니다. CCAC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오래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AC 사례관리자는 간호, 간병(목욕, 옷 입기 등 돕기), 물리치료, 직업치료, 사회복지 서비스, 영양 카운슬링, 의약품 및 의료기 등 각종 재택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택 지원 서비스 외에도, CCAC 사례관리자는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간병인을 도와줄 수 있는 기타 여러 가지 지역사회 서비스를 안내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CCAC는 장기요양원 입원을 위한 유일한 접근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장기요양원 입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CCAC 사례관리자는 장기요양원뿐만 아니라 고령자생활보조주택, 고령자전용주택 등의 다른 주거 대안과 재정적 옵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CCAC 사례관리자는 장기요양원 입원 자격을 평가해주며 신청 절차를 도와줍니다.

310-CCAC (310-2222)

www.310CCAC.ca

고령자의 주거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본 안내서의 '주택' 단원을 참고하십시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찾기

정기적으로 가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없는 사람을 위한 Health Care Connect(보건의료 연계) 프로그램은 그러한 사람의 지역사회에서 새 환자를 받는 의사 및 개업간호사와 연계해줍니다.

1-800-445-1822

www.ontario.ca/healthcareconnect

Health Care Options(보건의료 옵션)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즉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종합 정보 서비스입니다. Health Care Options는 긴급치료센터, 무예약/야간 진료소, Nurse Practitioner-Led Clinic(개업간호사 운영 진료소), Family Health Team(가정보건팀), Community Health Centre(지역사회 보건센터) 등의 1차 진료 서비스 자원 목록을 제공합니다.

1-866-330-6206

www.ontario.ca/healthcareoptions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Ontario(온타리오 주 내외과의협회)의 Doctor Search(의사 검색)는 온타리오 주의 내과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www.cpso.on.ca/docsearch

공공보건

Public Health Unit(공공보건국)

Public Health Unit는 모든 연령의 온타리오 주 주민이 건전한 생활양식, 방역, 예방접종 등, 보건의 모든 측면에 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보건 증진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ServiceOntario

1-866-532-3161

TTY: 1-800-387-5559

www.ontario.ca/ru3

ColonCancerCheck(대장암 검진)

이것은 온타리오 주 최초의 조직적 검진 프로그램으로서 검진률을 높임으로써, 조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율이 높은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온타리오 주는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입니다.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을 잘 알아야 합니다:

- 나이가 50-74세에 해당되니까?
- 지방질이 많고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니까?
- 담배를 피우니까?
- 술을 많이 마십니까?
- 신체활동이 적습니까?
- 비만하니까?
- 대장암 가족력이 있습니까(특히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염증성장질환(궤양성대장염 또는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까?

위 질문 중 단 하나라도 그 답이 '예'일 경우, 주치 의사 또는 개업간호사가 대장암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병을 조기에 발견해내는 적절한 검진법을 추천해줄 수 있습니다.

1-866-410-5853

TTY: 1-800-387-5559

www.ontario.ca/coloncancercheck

당뇨병

당뇨병은 소홀히 할 경우 심장 및 신장 질환, 뇌졸중, 실명, 사지절단 등의 심각한 장기적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중병입니다. 1형 당뇨병은 예방이 불가능하지만 2형 당뇨병은 건전한 식생활, 체중 관리 및 운동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당뇨병 모두 올바른 생활양식을 택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조기 징후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사에게 혈당을 측정하십시오.

조기 징후의 예:

- 심한 갈증
- 잦은 소변
-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증가 또는 감소)
- 체력 저하 또는 평소보다 심한 피로감

- 시야 흐림
- 전보다 잦거나 재발하는 감염
- 치유가 더딘 상해(상처 및 멍)
- 손발 저림 또는 무감각
- 발기부전

당뇨병 검사, 예방법, 당뇨병의 효과적 관리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Ontario Diabetes Strategy(온타리오 당뇨병 전략)
www.ontario.ca/diabetes

ServiceOntario
 1-866-532-3161
 TTY: 1-800-387-5559
www.ontario.ca/ru4

Canadian Diabetes Association(캐나다 당뇨병협회)
 1-800-BANTING (1-800-226-8464)
www.diabetes.ca

골밀도 검사

골다공증은 뼈를 약화시켜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병입니다. 골밀도 검사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손실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는 본인과 주치의가 골절 위험을 평가하고, 치료의 필요를 판단하고, 현재의 치료의 성공을 관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OHIP는 골다공증 및 골절 위험이 높은 사람의 경우 연 1회, 위험이 낮은 사람의 경우 이보다 낮은 빈도의 골밀도 검사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ServiceOntario
 1-866-532-3161
 TTY: 1-800-387-5559
www.ontario.ca/ru5

Osteoporosis Society of Canada(캐나다 골다공증협회)
 1-800-463-6842
www.osteoporosis.ca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생명을 구해주며 중병을 예방해줍니다. 각종 예방접종을 정해진 시기에 빠짐없이 맞음으로써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독감 및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고령자는 해마다 독감철(통상적으로 10월)이 시작되기 전에 무료 독감주사를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고령자의 경우 폐렴 예방접종은 한 번만 맞으면 되며, 일 년 중 언제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여, 각종 예방접종을 정해진 시기에 빠짐없이 맞으십시오.

HIV(에이즈) 치료

Canadian AIDS Treatment Information Exchange(캐나다 에이즈치료정보교환)는 에이즈 및 감염에 관한 비편파적인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기관은 에이즈 또는 C형 감염 환자, 위험에 처한 공동체,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단체 등에 전염 억제 및 삶의 질의 향상에 필요한 지식, 자원 및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1-800-263-1638

www.catie.ca

Canadian AIDS Society(캐나다 에이즈협회)와 Ontario HIV Treatment Network(온타리오 에이즈치료 네트워크)는 HIV/에이즈 연구 및 교육을 촉진하며, 지역사회 내 HIV/에이즈 환자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토론토의 동성애자,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원주민을 위한 단체인 2-Spirited People of the 1st Nations(영혼이 둘인 원주민)는 HIV/에이즈를 앓고 있거나 HIV/에이즈에 감염된 '영혼이 둘인 사람' 및 기타 개인에게 HIV/에이즈 교육, 홍보, 예방, 지원, 카운슬링 등의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he Canadian AIDS Society

1-800-499-1986

www.cdnaids.ca

The Ontario HIV Treatment Network

1-877-743 6486

www.ohtn.on.ca

2-Spirited People of the 1st Nations

416-944-9300

www.2spirits.com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OHIP)

OHIP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보건 서비스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온타리오 주 주민은 OHIP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유효한 온타리오 의료보험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수혜 자격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온타리오 주 주민은 주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OHIP의 보건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시민, 영주권자, 또는 Ontario's Health Insurance Act(온타리오 주 의료보험법) 상에 OHIP 수혜 자격이 있다고 명시된 캐나다 신규이민자 집단의 일원
- 12개월의 불특정 기간 중 153일간 온타리오 주에 물리적으로 존재한 사람
- 온타리오 주에 거주지를 정한 날짜로부터 처음 183일의 기간 중 153일 이상 온타리오 주에 물리적으로 존재한 사람
- 온타리오 주에 주 거주지가 있는 사람

통상적으로 OHIP 보장은 온타리오 주에 거주지를 정한 날짜로부터 3개월 후에 시작됩니다. 새로 왔거나 다시 돌아온 온타리오 주 거주자는 OHIP 대기 기간 중에 병이 날 경우에 대비하여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온타리오 의료보험카드

온타리오 주 주민은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OHIP)이 그 비용을 지급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유효한 의료보험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보험카드가 유효한 것이고 본인의 것일 경우, 사진이 있는 의료보험카드 또는 적색/백색 의료보험카드를 제시하면 OHIP가 보장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카드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카드를 보여주거나 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에 의료보험카드를 제시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사진이 있는 의료보험카드에는 카드 소지자의 생일과 동일한 만료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카드가 만료되면 ServiceOntario 센터에 가서 카드를 갱신하고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합니다. 사진이 있는 의료보험카드의 갱신

통지서는 카드 앞면에 표시된 만료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우송되지만, 빠르게는 만료일로부터 최고 6개월 전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적색/백색 의료보험카드는 만료일이 없습니다. 만 80세 이상인 사람은 우편으로 갱신할 수 있지만, 새로 발급되는 의료보험카드에는 사진 또는 서명이 없습니다.

ServiceOntario

1-866-532-3161

TTY: 1-800-387-5559

www.ontario.ca/exi2

보장되는 서비스

- **내과의 서비스:** 보건부는 내과 의사 제공하는, 의료적으로 필요한 모든 적격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병결증명서 발급 등)에 대해서는 내과 의사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 예약을 해놓고 가지 않거나 의료보험카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서비스:** 족병 전문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부분적으로 OHIP가 적용됩니다. 물리 치료사 등 기타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이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에 문의하십시오.
- **종합 병원 내 치과 진료 서비스:** OHIP는 종합 병원 내에서 시술된 일부 치과 수술에 대해 보험 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 치과의 일반 치과 진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안과 진료:** 만 20세 미만 및 만 65세 이상(65세 불포함)인 사람에 대해서는 연 1회의 눈 검사가 보장됩니다. 만 20-64세의 특정 안과 질환 환자는 검안의 또는 가정의에게 직접 가서 OHIP가 적용되는 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1차 진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하십시오. 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온타리오 장애 지원 프로그램), Ontario Works 또는 Family Benefits Program(가정 급여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2년마다 한 번씩 OHIP가 적용되는 정기 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Northern Health Travel Grant(북부 보건 여행 보조금):** 온타리오 주 북부 거주자로서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여행해야 할 경우, 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00-461-4006

- 캐나다의 기타 주 및 준주에서 받은 서비스: 온타리오 주 의료보험의 대부분은 캐나다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문 중인 다른 주 또는 준주에서 직접 온타리오 주에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캐나다 내 다른 지역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했을 경우, 거주지 관내 보건부 사무소에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환급 심사를 받으십시오. 다른 주 및 준주에서 제공된 처방의약품 조제, 가정 보건의료 서비스, 앰블런스 서비스 및 장기요양 서비스에는 OHIP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캐나다 국외에서 받은 서비스: 캐나다 국외 여행자의 경우에는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해 균일한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앰블런스 서비스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국외 여행을 갈 때, 해외에서 제공되는 응급 의료 서비스가 OHIP에서 나오는 보험급여보다 훨씬 더 비쌀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적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edsCheck(메즈체크)

이 무료 프로그램은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처방의약품, 일반의약품 및 대체의약품이 서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년 20-30분간 약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온타리오 주 주민으로서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3가지 이상의 처방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MedsCheck는 모든 처방의약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1-866-255-6701
 TTY: 1-800-387-5599
www.ontario.ca/medscheck

Ontario Drug Benefit(ODB) 프로그램

만 65세 이상으로서 유효한 의료보험카드가 있는 사람은 ODB 프로그램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에 정확한 우편주소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만 65세가 되는 날짜로부터 약 2개월 전에 ODB 수혜 자격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가 옵니다.

이 급여는 만 65세가 되는 달의 익월 1일부터 지급됩니다. 처방전과 의료보험카드를 약사에게 제시하고, 여러분이 ODB 프로그램 수혜자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약사는 정부의 Health Network System(보건의료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러분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주소가 바뀔 경우에는 즉시 보건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www.ontario.ca/addresschange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ServiceOntario 센터에서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및 공제액

ODB 급여연도는 8월 1일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약국에서 처방의약품 대금 중 \$100(공제액)를 내게 됩니다. 승인된 처방의약품을 구매함으로써 공제액을 내는 것입니다. 공제액을 내고 나면, 대부분의 고령자는 승인된 처방의약품 1건당 최고 \$6.11(본인부담금)를 내게 됩니다.

Seniors Co-Payment Program(고령자 본인부담금 프로그램)에 따라, 저소득 고령자는 승인된 처방의약품에 대해 공제액을 면제 받고 본인부담금을 \$2.00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키트를 구하려면 약국에 요청하거나, 1-800-575-5386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www.ontario.ca/ru6를 방문하십시오.

보장되는 품목

ODB 프로그램은 Ontario Drug Benefit Formulary/Comparative Drug Index (처방의약품집/비교약품색인)에 기재된 3,800여 종의 처방의약품, 몇몇 영양제 및 몇몇 당뇨병 검사약에 적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온타리오 주 의사 또는 기타 공인 처방자가 의약품을 처방해야 하며, 수혜자는 처방의약품 판매 면허가 있고 보건부 Health Network System 과 연결되어 있는, 인가된 온타리오 주 약국 또는 온타리오 주 의사에게 의약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품목은 ODB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온타리오 주 이외 지역에서 구매하는 처방의약품
- 보건부 Health Network System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진료소에서 구매하는 처방의약품
- 주사기 및 기타 당뇨병 의료기(랜싯, 혈당측정기, 안경, 의치, 보청기, 압박스타킹 등).

매우 특수한 경우, Exceptional Access Program(예외적 이용 프로그램)은 승인된 ODB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약품을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환자를 대신하여 의사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합니다.

당뇨병 검사약

당뇨병 환자가 혈당 수치 및 소변의 케톤 수치를 검사하는 데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ODB 프로그램에 의한 수혜 자격이 있는 당뇨병 환자로서 온타리오 주 의사가 처방한 승인된 당뇨병 검사약 처방전이 있을 경우, 보건부가 승인한 약품 목록에 기재된 당뇨병 검사약에 대해 ODB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Ontario Drug Benefit Program
1-866-532-3161
TTY: 1-800-387-5559
www.ontario.ca/h8h

치과 진료

일반 치과의 일반 치과 진료비는 본인 부담이지만, 의료적 필요에 의해 병원에서 시술되어야 하는 특정 치과 수술에는 OHIP가 적용됩니다. Long-Term Care Home 입원자는 입원할 때 치과 진단을 받으며, 자격증을 소지한 치과 전문가에게 지속적인 유료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습니다. 진료비는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냅니다. Long-Term Care Home에서 제공되지 않는 치료 또는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치과의 또는 기타 치과 전문가에게 의뢰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본인 및 대리인이 승인하고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체는 저소득 고령자의 치과 진료에 대해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2-1-1로 전화하거나 해당 시/지역/구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토론토대학교 및 웨스턴대학교 치의학부는 일반 치과보다 저렴한 진료비를 받고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utoronto.ca/dentistry/patientclinic/patientclinicmain.html 또는 www.schulich.uwo.ca/dentistry/patient를 방문하십시오.

Ontario Dental Association(온타리오 치과협회)는 고령자를 위한 구강위생 조언을 제공하며, 여러분의 거주지 내에 있는 치과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youroralhealth.ca/seniors97 및 www.youroralhealth.ca/find-a-dentist24를 방문하십시오.

Assistive Devices Program

온타리오 주 주민으로서 장기적인 신체 장애가 있을 경우,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맞춤형 보조기구 구매에 대해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효한 의료보험카드가 있는 온타리오 주 주민으로서 장기적 신체 장애가 있고 6개월 이상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보조기구 범주마다 충족되어야 할 특정한 수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Assistive Devices Program은 휠체어, 인공호흡기, 주문제작 발보조기 (발목보조기 포함) 등 보조기구의 대금의 최고 75%를 지원해줍니다. 보청기 등 기타 기구에 대해서는 균일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령자를 위한 누설치술 기구, 유방 보철, 주사기 및 바늘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Home Oxygen Program(재택 산소치료 프로그램)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만 64세 이하이지만 Long-Term Care Home 입원자로서 사회복지 지원을 받고 있거나 Community Care Access Centre를 통해 전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택 산소치료 기구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월 청구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1-800-268-6021
TTY: 1-800-387-5559
www.ontario.ca/ru8

앰불런스 서비스

앰불런스 이용자가 유효한 의료보험카드가 있고, 앰불런스 이용이 의료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담당 의사가 인정할 경우, 온타리오 주 내 의료기관 사이(예: 병원과 병원 사이)의 앰불런스 수송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택과 병원 사이의 앰불런스 수송에 대해서는 적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 지원 또는 특정 가정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Long-Term Care Home 등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요양원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앰불런스 이용자가 유효한 온타리오 주 의료보험카드가 없거나, 앰불런스 이용이 의료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담당 의사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육상 앰불런스 수송은 건당 \$240의 앰불런스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항공 앰불런스 수송은 수송비 전액이 부과됩니다.

온타리오 주 Regional Geriatric Program(RGP)

RGP는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필요가 있는 고령자의 질병 및 장애의 치료를 돕기 위한 노인병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차진료 의사, 지역사회 보건 전문가 및 기타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가장 노약하고 취약한 고령자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면 아래의 연락처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 온타리오 주 *Regional Geriatric Program*: www.rgps.on.ca

- 토론토 RGP: 416-480-6026, www.rgp.toronto.on.ca
- Specialized Geriatrics Services(노인병 전문 서비스 - 온타리오 주 남동부): www.sagelink.ca
- 온타리오 주 동부 RGP(오타와): 613-761-4458, www.rgpeo.com
- 중부 RGP(해밀턴): 905-777-3837 (구내번호 12436), www.rgpc.ca
- Specialized Geriatrics Services(온타리오 주 남서부): 519-685-4000 (구내번호 44028), www.sjhc.london.on.ca/specializedgeriatrics

정신건강 및 중독

전문화된 Geriatric Mental Health Outreach Program(노인정신건강 홍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고령자 및 그 가족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진단, 진찰, 치료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신질환이 있는 고령자 또는 그 가족은 이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할 수도 있고 가정의를 통해 의뢰될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려면 가정의에게 문의하십시오.

병원의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서비스

온타리오 주 내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정신질환자에게 급성 단기 치료를 제공하는 정신과 입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타리오 주 내 여러 정신병원 및 정신과 전문병원은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고령자를 치료하는 입원실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 시설 중 상당수는 주간 치료 프로그램, 외래환자 클리닉 등, 정신질환이 있는 고령자를 위한 외래환자 정신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에 연락하거나 직접 가십시오.

고령자를 위한 종합병원 정신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정의에게 문의하십시오.

일부 Community Care Access Centre도 고령자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ommunity Care Access Centre
310-CCAC (310-2222)
www.310CCAC.ca

Centre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CAMH - 중독및정신건강센터)

CAMH는 캐나다의 대표적 중독 및 정신건강 기관으로서 중독증 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이고 장애인 친화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AMH의 Geriatric Mental Health Program(노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및/또는 중독 문제가 있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치료, 지원 및 지속적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제휴 기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 및 중독 문제가 있는 만 60-64세 클라이언트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Geriatric Mental Health Program Central Intake Office(노인 정신건강 프로그램 중앙접수처)

416-535-8501 (구내번호 2875)

www.camh.net

온타리오 주 Canadian Mental Health Association(CMHA - 캐나다 정신건강협회)

온타리오 주 CMHA는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각종 서비스 및 지원의 향상이 그 목적인 비영리 자선단체입니다. 이 협회는 온타리오 주 전역의 32개 지부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온타리오 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정책 조언을 제공합니다.

1-800-875-6213

www.ontario.cmha.ca

ConnexOntario(커넥스 온타리오)

ConnexOntario는 알코올 및 마약, 정신질환 또는 도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보건 서비스 관련 정보를 무료 제공하는 3개 헬프라인을 운영합니다. 각 헬프라인은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운영됩니다.

Drug and Alcohol Helpline(마약 및 알코올 헬프라인)

1-800-565-8603

www.drugandalcoholhelpline.ca

Mental Health Helpline(정신건강 헬프라인)

1-866-531-2600

www.mentalhealthhelpline.ca

Ontario Problem Gambling Helpline(온타리오 문제도박 헬프라인)

1-888-230-3505

www.opgh.on.ca

담배 끊기

흡연 및 간접흡연은 만성 질환의 발발 및 발전, 이동 능력 제한, 신체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질병 및 사망 위험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크게 늘려주는 입증된 개입 전략입니다.

Smokers' Helpline(흡연자 헬프라인)
1-877-513-5333
www.smokershelpline.ca

Ontario Drug Benefit 프로그램도 만65세 이상의 온타리오 주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처방의약품 보장, 지역사회 약사가 제공하는 무료 금연 상담 등의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erviceOntario
1-866-532-3161
TTY: 1-800-387-5559

낙상 예방

낙상은 고령자의 상해의 주 요인이며, 낙상의 약 절반이 자택에서 발생합니다. 해마다 전체 고령자 인구의 3분의 1이 낙상을 입으며 흔히 건강, 독립성 및 삶의 질이 크게 손상됩니다. 다행히도 많은 종류의 낙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언을 따름으로써 낙상 위험을 줄이십시오:

-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십시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적어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한 번에 10분 이상 중강도 또는 고강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동 능력이 저조할 경우, 신체 활동은 균형 감각을 높여 낙상을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밑창이 고무이고, 굽이 낮으며, 신발을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끈 또는 벨크로가 달린 적절한 신발을 신으십시오.
- 골밀도 검사를 받으십시오. 골다공증은 뼈를 약화시켜 낙상 시 뼈가 부러지기 쉽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고령자의 골절상의 90% 이상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것이며, 여자는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면 주치의에게 골밀도 검사를 처방해달라고 하십시오.
- 여러분이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에 대해 잘 알고 계십시오. 약을 4가지 이상 복용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에 관해 주치의와 상담하여, 왜 그런 약들을 먹고 있는지, 그 부작용(졸음, 어지럼증 등)은 무엇인지, 약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 집안에 산재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줄이십시오. 위험의 예를 들자면, 방바닥의 느슨한 카펫 및 전기줄, 계단을 가로막고 있는 물건, 불량한 조명 등이 있습니다. 안전손잡이, 높은 번기 등의 보조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Osteoporosis Canada(캐나다 골다공증)
1-800-463-6842
www.osteoporosis.ca

A Guide to Preventing Falls(낙상 예방 안내서), What To Do If You Fall(낙상 시 어떻게 하나) 등, 낙상에 관한 Ontario Seniors' Secretariat 간행물 주문:

ServiceOntario Publications
1-800-668-9938
TTY: 1-800-268-7095
www.publications.serviceontario.ca

Safe Living Guide(안전한 생활 안내서), You Can Prevent Falls!(낙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12 Steps to Stair Safety at Home(가정의 계단 안전수칙 12가지), If You Fall or Witness a Fall(낙상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의 낙상을 목격할 경우), Do You Know What To Do?(어떻게 해야 할지 아십니까?) 등, 낙상에 관한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캐나다 공공보건국) 간행물 주문: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Division of Aging and Seniors(노화및고령자부)
1 800 0-Canada (1-800-622-6232)
www.phac-aspc.gc.ca/seniors-aines

영양

EatRight Ontario(온타리오 바른 식생활)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무료 조언을 제공해주는 Registered Dietitian(공인영양사)와 연계해줍니다. EatRight Ontario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고령자를 위한 인터넷 기반의 대화형 영양 지원 도구인 'Nutri-eScreen' 등, 건전한 식생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추가적 자원을 이용하십시오.

1-877-510-510-2
www.eatrightontario.ca

Eating Well with Canada's Food Guide(캐나다 식품 가이드에 따른 바른 식생활)

여러 해 동안 이 가이드는 캐나다 국민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과 활동의 올바른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되어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다양성과 절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Eating Well with Canada's Food Guide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Publications Health Canada(캐나다 보건부 출판국)
1-866-225-0709
TTY: 1-800-267-1245
www.healthcanada.gc.ca/foodguide

Dietitians of Canada(캐나다 영양사협회)

이 식품영양 전문가 협회는 캐나다 국민의 보건 및 안녕이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유익한 식품을 선택하고, 보건에 있어서의 영양의 역할에 대해 더 잘 알고, 거주지 내에서 영양사를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만듭니다.

416-596-0857
www.dietitians.ca

MedicAlert® Safely Home®

알츠하이머병 또는 이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은 흔히 아무 경고 없이 방황하다가 실종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해, Alzheimer Society(알츠하이머협회)와 Canadian MedicAlert Foundation(캐나다 메딕얼러트 재단)이 공조하여, Safely Home(세이프리 홈) 서비스와 MedicAlert(메딕얼러트) 서비스의 장점을 결합함으로써 Safely Home 프로그램을 개선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사람의 신원을 경찰 및 비상 대응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이름이 새겨진 신원 확인 팔찌가 회원에게 유료로 제공됩니다.

1-855-581-3794
www.alzheimer.ca (>Living with dementia > Safety > MedicAlert® Safely Home®)

Finding Your Way(길 찾기)

방황하거나 실종될 수 있는 치매 환자를 돕고 간병인 및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온타리오 주 Alzheimer Society와 각 지방 협회가 공조하여 Finding Your

Way를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의 방황 및 실종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과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실제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Finding Your Way

www.findingyourwayontario.ca

Alzheimer Society of Ontario

1-800-879-4226

www.alzheimerontario.org

2-1-1

www.211ontario.ca

Community Support Services

Community Support Services는 여러분이 자택에서 살면서 안전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택에서 제공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 내의 집단 환경에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가 있으며, 여러분의 거주지에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수수료를 받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영리회사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면 다음 연락처에 문의하십시오:

Community Care Access Centre

310-CCAC (310-2222)

www.310CCAC.ca

성인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간병 또는 부양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집단 환경에서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조직적 활동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일반적으로 계획적 여가활동 및 신체 활동, 급식, 교통편 제공, 약간의 개인 간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도 있지만, 식대 및 교통비에 상당하는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aregiver Respite(간병인 휴식)

흔히 가족이 간병인이 되지만, 통상적으로 간병을 하는 간병인이 휴식을 취하거나 자신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휴식관리 서비스’라고 하며 In-Home Respite(재택 휴식) 및 Short-Stay Respite(단기 휴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Client Intervention(클라이언트 원조)

이 서비스는 영양 관리, 가사, 각종 서비스 찾기, 각종 양식 작성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Emergency Response Service(비상대응 서비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항상 비상대응센터와 연결되어 있도록 집안에 전자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흔히 이 기기는 항상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도록 목에 겁니다.

발 관리 서비스

이 서비스는 발톱을 다듬고, 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목욕 및 마사지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돕는 훈련된 담당자에 의해 제공됩니다. 서비스 이용가능성 여부는 여러분의 필요, 그리고 지역사회 내 발 관리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Friendly Visiting(우정의 방문)

이 서비스는 자원봉사자가 고립된 고령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택을 방문하지만, 자원봉사자가 심부름을 해주거나, 여러분이 장보기, 은행 거래 또는 기타 활동을 할 때 동반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정도우미 알선 서비스

이것은 가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알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유지관리 및 보수 서비스

몇몇 서비스 기관은 마당 유지관리, 눈 치우기, 창문 닦기, 1회성 수리 작업 등의 과중한 주택 유지관리 작업을 관련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노약자 또는 신체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기관이 용역업체를 알선해줄 수는 있지만, 용역업체에 대한 수수료 지불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급식 서비스

여러분의 필요와 서비스 공급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자택에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배달해주거나 여러분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주선해줍니다. 식대 및 교통비에 상당하는 이용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여가활동 서비스

고령자 센터에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지역사회 참여 및 세대간 교류를 촉진하는 각종 학습 활동 및 여가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히 'Older Adult Centre'라고 불리는 고령자 센터는 매우 건강한 사람부터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령자는 이사회 이사직, 프로그램 기획 관련 조언, 자원봉사 활동 등의 역할을 맡아 Older Adult Centre의 운영에 직접 참여합니다.

교통 서비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존의 여러 가지 교통 옵션을 이용할 수 없거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거주지 내 서비스 공급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자동차, 지역사회 차량 또는 택시를 이용한 교통편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도 있지만, 교통비에 상당하는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안전 점검/확인 서비스

자원봉사자가 정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화하여,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상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완화치료

호스피스 완화치료는 고통을 완화하고 삶과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치료를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과 그 가족이 죽음의 과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및 실제적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합지속치료

'만성치료'라고 불리기도 하는 복합지속치료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이고, 의료적으로 복합적이며,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간

지속되기도 하는 이 치료는 종합병원에서 제공되며, 그 대상은 전형적으로 가정 또는 Long-Term Care Home에서 제공되지 않는 전문적 기술 기반 치료를 요하는 만성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진료비, 입원비, 식대 및 기타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장기 및 조직 기증에 대해 알아보려면 본 안내서의 ‘안전 및 보안 - 법률 문제’ 단원을 참고하십시오.

원주민 고령자

National Aboriginal Diabetes Program(전국 원주민 당뇨병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한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77-232-NADA (232-6232)

www.nada.ca

Substance Abuse and Treatment(약물남용 치료)

Health Canada(캐나다 보건부)는 원주민 및 이누이트 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약물남용 치료 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물남용 개인 및 가정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ealth Canada

Treatment Centre Directory for Ontario(온타리오 주 치료센터 목록)

1-800-640-0642

TTY: 1-800-267-1245

www.hc-sc.gc.ca

원주민 및 이누이트 족 Non-Insured Health Benefits(NIHB - 비보험 보건급여)

NIHB는 적격 원주민 및 이누이트 족을 대상으로 특정 범위 내의 의약품, 치과 진료, 안과 진료, 의료 기구 및 장비, 단기 위기 개입, 정신건강 상담, 의료 수송 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Health Canada

1-800-640-0642

TTY: 1-800-267-1245

www.hc-sc.gc.ca/fniah-spnia/nihb-ssna/index-eng.php

동성애자, 이성애자 및 트랜스젠더(LGBT) 고령자

Rainbow Health Ontario(온타리오 레인보우 보건)

이 기관은 교육, 연구, 홍보 및 공공정책 옹호를 통해 LGBT 집단의 보건 및 안녕의 향상을 위해 힘씁니다. LGBT 고령자에 초점을 맞춘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보건 문제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416-324-4100

www.rainbowhealthontario.ca

재향군인

적격 재향군인은 Veterans Affairs Canada를 통해 진료, 수술, 치과 진료, 처방의약품, 보청기/시력보조기 등 다양한 보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Veterans Independence Program(재향군인독립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은 수혜 자격이 있는 재향군인 등이 자택 및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Veterans Affairs Canada

1-866-522-2122

www.veterans.gc.ca

5 주택

주택 개조

우리는 대부분 되도록 오래 ‘내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지만, 주거의 필요는 살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비용을 들여 집을 조금만 개조해도 더 안전한 집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나이가 들어도 계속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개조를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캐나다 주택공사) 온라인 간행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Maintaining Seniors’ Independence Through Home Adaptations: A Self-Assessment Guide*(주택 개조를 통한 고령자의 독립성 유지: 자가진단 가이드)는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주택 개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Accessible Housing By Design*(장애인친화적 주택 설계)은 여러분의 집을 보다 장애인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조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 *At Home with Alzheimer’s Disease*(알츠하이머병을 안고 집에서 지내기)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주택의 개조에 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 *Preventing Falls on Stairs*(계단에서의 낙상 예방)는 계단에서의 낙상 및 상해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1-800-668-2642

TTY: 1-800-309-3388

www.cmhc.gc.ca (> Maintaining a Home > Adaptations for Seniors)

재정 지원 프로그램

집을 보다 장애인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개조할 생각이 있을 경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Healthy Homes Renovation Tax Credit

이 세금공제는 고령 주택소유자 및 임대주택 세입자, 그리고 집을 더 안전하고 장애인 친화적으로 개량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가족/친척과 동거하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개조의 예를 들자면 장애인용 샤워 시설(휠인 또는 워크인 샤워 시설), 욕실 안전손잡이 및 난간, 높이를 낮춘 주방 카운터 또는 찬장 등이 있습니다.

Ministry of Finance
1-866-668-8297
TTY: 1-800-263-7776
www.ontario.ca/healthyhomes

Ontario Renovates(온타리오 개량)

Investment in Affordable Housing for Ontario Program(온타리오 주 서민주택투자 프로그램 - 2011-2015)의 Ontario Renovates는 적격 저소득 주택소유자 및 임대주에게 감면 또는 유예가 가능한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주택 또는 주거단위를 보수하여 장애인 편의성을 높이고 기존의 단독세대 주택 내에 저렴한 임대 주거단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보수는 Ontario Renovates 하에 적격한 보수이며, 이러한 보수에 대해 최고 \$3,500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서민주택 프로그램은 각 지방자치체와 일명 'Service Manager (서비스관리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District Social Services Administration Board(지역사회복지서비스관리위원회)에 의해 운영됩니다. Service Manager는 해당 지역의 주택 필요를 바탕으로 Ontario Renovates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지방자치문제및주택부)
Service Managers and Their Service Areas(서비스관리자 및 관할 서비스지역)
www.ontario.ca/kq46

고령자 및 장애인 재산세 감면

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위해 주택을 건설 또는 개조하는 주택소유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개조 및 증축의 예는 경사로 설치, 방 증축 등입니다. 자신의 집이 수혜 자격에 부합된다고 생각될 경우, 거주지 관내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시영 부동산감정공사)에 문의하십시오.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
1-866-296-MPAC (1-866-296-6722)
TTY: 1-877-TTY-MPAC (6722)
www.mpac.ca (> Property Owners > Property Assessment Procedures > Tax Incentive Programs > Senior and Disabled Property Tax Relief)

저소득 고령자 및 저소득 장애인 재산세 감면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 고령자 및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감정가 조정에 따른 재산세 인상에 대해 감면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거나 여러분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거주지 관할 시청에 문의하십시오.

Provincial Land Tax Deferral Program for Low-Income Seniors and Low-Income Persons with Disabilities(저소득 고령자 및 저소득 장애인 주토지세 유예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저소득 고령자 및 저소득 장애인은 Provincial Land Tax(주토지세) 및 Education Tax(교육세) 인상분의 일부에 대해 매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세금은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산세를 온타리오 주에 직접 납부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Ministry of Finance(재무부)
1-866-400-2122
TTY: 1-888-321-6774
www.ontario.ca/rva

Home and Vehicle Modification Program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본 안내서의 '재정 - 재정 지원' 단원을 참고하십시오.

주거 옵션

본인 또는 가족에게 어떤 주거 옵션이 가장 적합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내 Community Care Access Centre의 사례관리자 (www.310CCAC.ca or call 310-CCAC)
- 노인병센터 또는 가정상담소의 사회복지사
- 지역사회보건간호사

Adult Lifestyle Community(성인 생활양식 공동체)

Adult Lifestyle Community는 퇴직자 또는 불완전퇴직자에게 독립적 주거를 제공합니다. 주거 형태는 주택 소유의 장점에 현장 여가활동 및 공동체 활동이 가미된 방갈로식 주택, 연립주택, 소형 주택, 콘도 등이 있습니다. 편의 서비스로는 24시간 경비, 동료와의 사고, 레저 및 여가활동 등이 있습니다. 가까운 Adult Lifestyle Community를 찾아보려면 거주지 내 부동산중개인에게 문의하십시오.

평생임대주택

평생임대주택 주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있지만 소유권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주거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같은 지역 내 비슷한 크기의 콘도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평생임대주택은 특정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공통 관심사 및 필요를 공유하기가 쉽습니다.

고령자전용주택

고령자전용주택은 다양한 종류의 주거 시설(공동사용방에서 대형 아파트에 이르기까지)에 생활 보조 서비스 및 개인 간병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 상품을 판매하는 민간 사업입니다. 누구든지 고령자전용주택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 및 간병 서비스 요금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주거 요금은 집세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거 시설의 종류와 요금은 제공되는 간병 서비스, 각종 서비스 및 편의시설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생활 보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서 입주자의 필요를 평가합니다.

고령자전용주택은 Retirement Homes Act(고령자전용주택법), 2010에 의거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 법은:

- 비상 계획, 감염 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 간병 필요의 평가 및 간병 계획, 신원조회, 근무자 훈련 등, 고령자전용주택에 대한 간병 및 안전 기준을 규정합니다.
- 간병 서비스 및 주거 비용을 알 권리, 학대 또는 방치가 일절 용납되지 않는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포함된 Residents' Bill of Rights(입주자 권리헌장)를 만들었습니다.
- 고령자주택이 규정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고령자전용주택 교육, 인허 및 감사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인 Retirement Homes Regulatory Authority(고령자주택규제국)를 설립했습니다.

지역사회 내 고령자전용주택에 대해 알아보려면 Retirement Homes Regulatory Authority에 문의하십시오.

온타리오 주 Retirement Homes Regulatory Authority는 온타리오 주 내의 고령자전용주택을 인허 및 감사하고, 면허를 발급 받았거나 신청한 모든 고령자전용주택의 Public Register(공공등록부)를 관리하고 (www.rhra.ca/en/register), 입주자 민원을 처리하고, 고령자전용주택 직원 및 소유주, 소비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Retirement Homes Act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온타리오 주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Retirement Homes Regulatory Authority에 전화(무료)하여 고령자전용주택 민원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량한 간병, 학대 또는 방치, 불법적 행위 등으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러한 일이 의심될 경우, 또는 입주자의 금전이 오용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Retirement Homes Regulatory Authority Registrar(총무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tirement Homes Regulatory Authority
1-855-ASK-RHRA (1-855-275-7472)
www.rhra.ca

고령자생활보조주택

보조 주택 프로그램은 지정된 주거 시설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현장 개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 간병/생활 보조 서비스, 필수 가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계획표에 따라 규칙적으로 간병 및 비상 필요를 처리합니다.

Community Care Access Centre
310-CCAC (310-2222)
www.310CCAC.ca

저소득 고령자 주거 옵션

Investment in Affordable Housing for Ontario (2011-2015)

이 프로그램은 서민주택의 건축 및 보수, 그리고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집세 및 계약금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서민주택 프로그램은 각 지방자치체와 일명 'Service Manager'라고 불리기도 하는 District Social Services Administration Board에 의해 운영됩니다. 해당 지역의 주택 필요를 바탕으로, Service Manager는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
Service Managers and Their Service Areas
www.ontario.ca/kq46

Rent-Geared-To-Income Housing(소득비례집세 주택)

사회복지 주택은 저소득/중소득 온타리오 주 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에 의해 개발됩니다. 입주 대기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비례집세 지원 신청은 해당 지역의 Service Manage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
Service Managers and Their Service Areas
www.ontario.ca/kq46

조합주택

조합주택 거주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자기자본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공동체 운영에 관해 동등한 발언권이 있습니다. 조합은 비영리입니다. 주택조합에서 탈퇴하면 살던 집이 조합으로 반환되어, 저렴한 서민주택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배정됩니다.

Co-operative Housing Federation of Canada(캐나다 조합주택연합)
Ontario Regional Office(온타리오 지역사무소)
1-800-268-2537
www.chfcanada.coop

비상 집세 지원

Community Homelessness Prevention Initiative(지역사회 노숙방지계획)

이 계획은 노숙을 예방하고 억제하며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및 활동을 지원합니다. 전에 시행되었던 다음 5개 노숙 관련 프로그램에 의한 재정 지원이 합쳐져서,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이 시행하는 단일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 Consolidated Homelessness Prevention Program(통합 노숙방지 프로그램)
- Emergency Energy Fund(비상에너지기금)
- Emergency Hostel Services(비상호스텔 서비스)
- Domiciliary Hostel Program(주거호스텔 프로그램)
- Provincial Rent Bank(온타리오 주 집세은행)

각 지방자치체와 일명 ‘Service Manager’라고 불리기도 하는 District Social Services Administration Board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
Service Managers and Their Service Areas
www.ontario.ca/kq46

임대주-세입자 관계

Residential Tenancies Act(주택임차법), 2006

온타리오 주 전역의 대부분의 임대주-세입자 관계에 적용되는 이 법은 주거용 부동산을 임차하는 세입자와 임대주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하고 대부분의 집세 인상을 규제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andlord and Tenant Board(임대주세입자위원회)

Landlord and Tenant Board는 임대주와 세입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며,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주 또는 세입자가 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재 신청을 하면 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위원회 위원이 판정을 내리거나, 쌍방이 동의할 경우에는 중재자가 나서서 쌍방의 합의를 돕습니다.

1-888-332-3234

www.ontario.ca/rvb

원주민 고령자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은 원주민 보호구역 내외의 주택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원주민, 메티스(백인-원주민 혼혈), 이누이트 족 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며 특정적으로 고령자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Residential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gram On-Reserve(보호구역 내 주거 재건 지원 프로그램)는 Band Council(원주민협의회) 및 협의회 위원들이 수준 이하의 열악한 주택을 보수하여 최소한의 보건 및 안전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위해 주택의 장애인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1-800-668-2642

TTY: 1-800-309-3388

www.cmhc.ca/en/ab

Ministry of Aboriginal Affairs(원주민문제부) - 주택 자원

Ministry of Aboriginal Affairs는 서민주택과 관련된 각종 온타리오 주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866-381-5337

TTY: 1-866-686-6072

www.ontario.ca/rvc

Assisted Living Program(생활보조 프로그램)

Aboriginal Affairs and Northern Development Canada(캐나다 원주민문제및북부개발부)의 Assisted Living Program은 고령자, 성인 만성질환 환자, 장애 아동 및 성인을 위한 비의료적 사회복지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되도록 오래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Aboriginal Affairs and Northern Development Canada

1-800-567-9604

TTY: 1-866-553-0554

www.aadnc-aandc.gc.ca (> Social Programs > Assisted Living Program)

6 장기요양원

일반 정보

고령자전용주택에 대해 알아보려면 본 안내서의 ‘주택’ 단원을 참고하십시오.

Long-Term Care Home은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안전한 환경에서의 감독, 24시간 간호 및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시설입니다. ‘양로원’, ‘시영 노인요양원’, ‘노인전용 자선주택’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로부터 인허 또는 승인을 받고 재정 지원을 받으며 간병, 각종 서비스, 입원료 등에 있어서 주정부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Ontario Long-Term Care Association(온타리오 장기요양원협회)
905-470-8995
www.oltca.com

Ontario Association of Non-Profit Homes & Services for Seniors
(온타리오 비영리양로원및고령자서비스협회)
905-851-8821
www.oanhss.org

신청 방법

Long-Term Care Home 입원을 생각하고 계신 분은 거주지 관내 Community Care Access Centre(CCAC)에 문의하십시오. CCAC는 입원 자격을 심사하며 대기자 명단을 관리합니다. CCAC는 입원신청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는 케이스워커를 배정해줍니다. 신청서에 희망하는 Long-Term Care Home을 최대 5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Community Care Access Centre
310-CCAC (310-2222)
www.310CCAC.ca

장기요양원 선택

CCAC 사례관리자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도와줄 수 있지만, Long-Term Care Home을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근무자들이 친절하고 자상한가?

- 입원자들이 만족해 하고 보살핌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은가?
- 요양원의 위치가 편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가?
- 면회 시간이 신축적인가?
- 요양원이 나의 종교적, 영적, 문화적, 언어적 및 식생활적 필요를 충족해줄 수 있는가?
- 내 개인 소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가?
- 내 소유의 가구 또는 식품을 반입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고려하고 있는 요양원들을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둘러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웹사이트 www.ontario.ca/rvd에서 각 요양원에 대한 Facility Review Summary Report(시설평가요약보고서)를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단기 입원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 중인 고령자는 Long-Term Care Home에 영구적으로 입원할 필요 없이 Long-Term Care Home에서 제공하는 단기 입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입원자는 일 년에 최고 90일간 임시 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의 일부 Long-Term Care Home은 현재 Convalescent Care Program(회복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진단 및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살피는 간병사에게 휴식을 주거나 종합병원 입원 후 체력 회복을 위해 단기 입원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료

모든 간호 및 개인 간병 서비스 이용료는 주정부가 지불하지만, Long-Term Care Home 입원자는 온타리오 주 내 전지역에서 동일하게 부과되는 입원료를 내야 합니다. 이것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금의 금액은 입원 기간 및 병실 종류(독실, 2인실 및 일반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기 입원은 한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기 입원은 일 년에 최고 90일간의 임시 입원을 말합니다. 입원료는 일반적으로 매년 7월 1일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에서 결정합니다.

www.ontario.ca/rvf

일반실 입원에 대한 월 본인부담금을 낼 수 없을 경우, 이용료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CCAC 사례관리자와 상담하십시오.

서비스

Long-Term Care Home은 집처럼 편안해야 합니다. 모든 입원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에는 식당 및 공용구역이 있으며 상점, 미용실, 예배당, 정원 등의 기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모든 Long-Term Care Home은 24시간 감독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입원 패키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구, 식사, 침구 및 세탁, 개인위생용품, 의약품 및 의료기, 청소 및 관리, 사고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투약, 일상생활 보조
- 24시간 간호 및 개인 간병, 의사/기타 보건의료 전문가 진료
- 입원자의 간병 요건을 요약한 것으로서 최소 3개월마다 재검토/업데이트되는 개별 ‘간병계획’

사용료를 내면 케이블 TV, 개인 전화, 미용 서비스 등의 기타 서비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입원자 권리

Long-Term Care home 입원자는 입원자를 정중하게 대하고 자상하게 보살피는 환경에서, 학대와 방치를 당하지 않고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영어 및 프랑스어로 된 큰활자판 Residents' Bill of Rights를 게시해야 합니다. 요양원에 입원할 때 요양원은 입원자 및 그 대리 의사결정자에게 Residents' Bill of Rights 사본을 주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려점과 불만을 제기하거나 요양원 개선에 관해 건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요양원 입원자는 또한 Family Council(가족협의회) 및 Ontario Association of Residents' Council(온타리오 주 입원자협의회연합)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www.e-laws.gov.on.ca/html/statutes/english/elaws_statutes_07108_e.htm#BK5.

감사

온타리오 주의 모든 인가된 Long-Term Care Home은 입원자의 간병, 삶의 질 및 권리와 Long-Term Care Home 운영에 관한 명확하고 상세한 기준을 정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요양원은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감사를 받습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는 예고 없는 감사를 실시하며 강제집행 수단을 사용합니다.

장기요양원 보고서

2010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모든 Long-Term Care Home에서 실시된 감사에 대한 모든 감사보고서 및 명령의 일반 공개용 버전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으며 각 요양원 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요양원 소유권, 병상수 등의 일반 정보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보려면 웹사이트 www.ontario.ca/rvd를 방문하십시오.

민원

Long-Term Care Home 입원자의 상황에 관한 우려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원자 본인, 가족, 요양원의 고용인, 입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일반인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요양원은 민원 처리 절차를 게시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요양원과 직접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ong-Term Care ACTION Line(장기요양 상담 전화)

1-866-434-0144

Director, Performance Improvement and Compliance Branch

(운영개선및규정준수부 부장)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

11th Floor, 1075 Bay St.

Toronto ON M5S 2B1

Ontario Association of Residents' Councils

모든 Long-Term Care Home 입원자는 입원자협의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목적은 의견, 제안 및 우려의 교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온타리오 주 연합은 입원자협의회를 지원하고 입원자를 대변하며 간병의 기준을 촉진합니다.

1-800-532-0201

www.ontarc.com

Family Councils

상부상조, 정보 공유 및 입원자 옹호를 위해 모이는 입원자 가족 및 친구로 이루어진 가족협의회가 있는 Long-Term Care Home이 많습니다.

Ontario Family Councils' Program(온타리오 가족협의회 프로그램)

1-888-283-8806

www.familycouncilmembers.net

7 안전 및 보안

소비자 정보 및 보호

온타리오 주 Ministry of Consumer Services(소비자보호부)는 공정하고 안전하며 정보에 입각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온타리오 주의 소비자를 교육하고 보호하며 지원합니다.

Ministry of Consumer Services
1-800-889-9768
TTY: 1-877-666-6545
www.ontario.ca/consumerservices

계약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한 협정서에 서명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곧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하십시오. 친구, 가족 및 동료들에게 거래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거래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평판을 조회해보십시오.
- 영업사원과 협의한 모든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약속은 구속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고 하십시오.

계약을 맺은 후에:

- 여러분의 자택에서 서명했고 계약금액이 \$50 이상인 계약 등 몇몇 계약은 10일 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또는 다른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한, 원래의 견적에서 10%를 초과한 가격은 지불하지 마십시오.
- 주문한 물품 또는 서비스가 약속한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배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원도용

신원도용이란 여러분이 모르거나, 또는 여러분의 허락 없이 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악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자는 평생 동안 견실한 신용을 쌓으며 투자를 늘려왔기 때문에 흔히 신원도용의 표적이 됩니다. 범죄자는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빼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절취
- 회사 사장, 은행 또는 공익사업 회사로 가장하여 개인 정보 요구
- 속임수를 써서 암호 알아내기
- 재활용품 또는 쓰레기를 뒤져 개인 정보 알아내기

이 정보는 다음과 같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명의로 신규 신용카드 또는 은행 계좌 개설하기
- 모기지 얻기
- 의료보험카드, 출생증명서, 기타 법적 문서 위조하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려면:

- 은행 계좌 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개인 정보가 기재된 문서는 그냥 버리지 말고 파쇄하십시오.
- 출생증명서 또는 사회보장번호(SIN)를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고, 취업 또는 세금 문제로 법에 의해 필요할 경우에만 제시하십시오.
- 전화 상으로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 암호 또는 개인식별번호(PIN)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마십시오.
- 개인 정보, 은행 거래 정보 또는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스팸 이메일에 답하지 마십시오.

사기꾼에게 속아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될 경우, 즉시 거래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신고하십시오.

‘피싱’

‘피싱(phishing)’ 기술을 쓰는 범죄자는 주로 고령자를 표적으로 삼고, 은행처럼 사람들이 신뢰하는 기관의 것으로 보이는 가짜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하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 가짜 웹사이트는 방문자가 신용카드 번호,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정보, 암호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합니다. 그런 다음 이 정보를 이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피싱을 하는 ‘피셔(phisher)’는 흔히 긴박감을 조장합니다. 수신자로 하여금 즉시 대응하도록 하는 즐거운 소식이나 우울한 소식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고 속임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경우,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신용카드 뒷면 또는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를 사용하여 해당 회사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려면:

- 인터넷 상에서 은행 거래 정보 및 암호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 이메일에 제시된, 특정 웹사이트와 연결된 링크를 클릭하지 마십시오. 웹사이트 주소를 인터넷 브라우저 창에 직접 입력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해당 회사에 직접 전화하십시오.

상품권카드

알고 계십니까?

-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품권카드는 대부분의 경우 만료되지 않습니다. 카드를 판매한 회사가 문을 닫지 않은 한, 충전된 금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잔액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 상품권카드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로부터 카드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카드를 판매하기 전에 카드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을 구매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주거나 보여주어야 합니다.
- 서비스 수수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카드를 주문하거나 카드를 교체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비사용 수수료 또는 카드 재활성화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www.ontario.ca/rvj

사기/사취

고령자는 흔히 사기의 표적이 되며 직접 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히 조심해야 할 사기의 예입니다:

- 주택 개량 사기
사기꾼들은 고령자에게 접근하여 휠체어 경사로 설치, 지붕 보수 등 다양한 주택 개량에 대한 고령자 특별 할인을 제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친절하고 여러분의 독립성 및 안녕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호감을 나타내면 이들은 특정 개량 공사에 대한 공정 시장가격의 3-4배를 청구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면 조회처를 제시해달라고 하고,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특정 개량 공사의 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익사업 사칭 사기
사기꾼은 흔히 도둑과 한 조가 되어 다니면서 공익사업체 직원으로 가장하고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려 합니다. 한 명은 여러분에게 집안에 있는 공익사업 설비(가스계량기 등)를 보여달라고 하고, 그 동안 다른 한 명은 집안을 뒤져 귀중품, 처방의약품, 개인 정보(은행 거래 정보 등) 등을 훔칩니다. 항상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해당 공익사업 회사에 연락하여 점검원의 신분과 서비스 예약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경품 또는 휴가 사기
흔히 고령자들은 상품, 여행 상품 등의 경품에 당첨되었다면서 교통비, 보험료 또는 법무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전화 또는 이메일을 받습니다. 절대로 돈을 미리 보내지 마십시오. 정말로 어떤 경품에 당첨되었다면 돈을 하나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 비상 사기
사기꾼들은 흔히 긴박감을 조장합니다. 믿는 친구 또는 친척(손자, 손녀 등)인 것처럼 가장한 이메일을 보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믿는 친구 또는 친척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이들은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인터넷 상에서 당장 돈을 보내달라고 할 경우,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 위조 웹사이트
고령자는 가장 빨리 성장하는 온라인 쇼핑객 집단입니다. 안타깝게도, 몇몇 웹사이트는 모조 상품을 매우 싼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사고 싶은 상품이 있을 때는 항상 시간을 들여 해당 상품에 대해 조사해보십시오. 잘 알려진 웹사이트에서 구매하십시오. 고객 사용후기를 읽어보고, 직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Canadian Anti-Fraud Centre(캐나다 사기방지센터)

이 센터는 소비자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사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특정 대중 마케팅 사기 선전에 관한 일반인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eniorBusters(시니어 버스터스)는 고령자를 표적으로 한 대중 마케팅 사기를 퇴치하기 위해 힘쓰는 고령 자원봉사자 단체입니다. SeniorBusters 프로그램은

불법 대중 마케팅 사기, 신원도용 또는 사기를 당한 고령 피해자에게 교육,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제공합니다.

Canadian Anti-Fraud Centre
1-888-495-8501
www.antifraudcentre.ca

비상 서비스 및 공공안전

9-1-1

즉각적인 경찰, 소방 또는 앰بول런스 지원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9-1-1로 신고하십시오.

비상 대비

Emergency Management Ontario(온타리오 비상관리국)는 장애 또는 특수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비상 대비 비디오, 자원 링크,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안내서 등의 형식으로 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Emergency Survival Kit(비상생존 키트) 만들기, 가족 비상 계획 세우기, 비상시 안전하게 지내기 등을 배우십시오. 비상경보 서비스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Emergency Management Ontario
1-877-314-3723
www.ontario.ca/beprepared

Public Safety Canada(캐나다 공공안전부)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Your Emergency Preparedness Guide (비상대비 안내서)’ 등의 간행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안전 요령 및 정보 (인쇄물 및 온라인 버전)를 제공합니다.

Public Safety Canada
1-800-O-CANADA (1-800-622-6232)
www.getprepared.gc.ca

노인학대

“신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위해 또는 괴로움을 입히는 일회성 및 반복성 행위, 또는 적절한 행동의 결여.”

(세계보건기구, 2002)

노인학대는 재정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 또는 방치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본인 또는 아는 사람이 당면한 위험에 처해 있거나 비상 상황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9-1-1로 신고하십시오. 본인 또는 아는 고령자가 절도, 사기 또는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관내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지원에 대해 알아보거나 이용하려면 2-1-1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www.211ontario.ca를 방문하십시오.

Ontario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ONPEA - 온타리오 노인학대방지 네트워크)

ONPEA의 Regional Elder Abuse Consultant(지역 노인학대 컨설턴트)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및 관내 노인학대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노인학대 피해자 또는 위험자의 각종 서비스 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 노인학대를 발견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일선 근무자 훈련
- 노인학대 문제 및 도움 받기에 대한 인식 제고

Regional Elder Abuse Consultant는 사법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관내 노인학대 네트워크 등에 대해 주요 자원 역할을 합니다.

416-916-6728
www.onpea.org

화재안전

화재안전에 있어서 고령자가 특히 취약합니다. 이동 능력 감퇴와 인지적 어려움 때문에 화재에 대응하고 안전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내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주지하십시오:

- 연기경보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법에 의해, 주택의 각 층과 침실 외부에 연기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월 연기경보기를 시험하고 일 년에 한 번, 또는 배터리 경고음이 울릴 때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청각장애가 있거나 잘 때 방문을 닫아 놓을 경우에는 침실 내에 연기경보기를 설치하거나 경광 경보기 또는 진동 경보기를 설치하십시오.
- 가능한 한, 모든 방마다 출구가 2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동 능력을 고려한 가정 화재 대피 계획을 세우십시오. 대피 계획을 자주 연습하십시오. 기억력 문제가 있는 고령자의 경우, 대피 계획을 종이에 적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음식을 조리할 때는 주방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고령자의 경우, 조리용 불은 화재로 인한 상해의 주 원인의 하나입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 주방에서 나갈 경우에는 스토브/오븐을 끄십시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소매가 팔에 꼭 끼는 옷을 입거나 소매를 걷고 하십시오. 헐렁하거나 덜렁거리는 옷은 버너 또는 개방화염에 닿을 경우 불이 붙기 쉽습니다.
- 흡연자에게는 실외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쉽게 쓰러지지 않고 담뱃재가 옆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크고 깊은 재떨이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불이 붙기 쉬운 피트모스, 분쇄목, 목피 등이 들어 있는 화분 안에다 담뱃불을 끄지 마십시오.
- 재떨이를 비울 때는 재떨이에 물을 부어 비우거나 번기에 비우십시오. 불씨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절대로 재떨이를 쓰레기통에 비우지 마십시오.
- 절대로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화재안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거주지 관내 소방서에 문의하거나 Office of the Fire Marshal(소방국장실)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ontario.ca/firemarshal

법률 문제

법률 관련 필요의 충족

온타리오 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및 법무사는 Law Society of Upper Canada(온타리오 법률협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가정법 또는 형사 문제, 민사 소송, 유언장, 위임장, 유산 상속 문제, 부동산 거래, 행정법 문제 등 모든 종류의 법률 문제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법무사는 Small Claims Court(소액재판소), 심판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등) 청문회, 최고 형량이 징역 6개월인 경미한 형사 범죄 사건 등에서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Law Society of Upper Canada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찾기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he Law Society of Upper Canada
 1-800-668-7380
 TTY: 416-644-4886
www.lsuc.on.ca

Law Society Referral Service(법률협회 알선 서비스)

이 서비스는 법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연계해줍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30분간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여,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와 선택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800-268-8326
www.lrs.lsuc.on.ca

Legal Aid Ontario(온타리오 법률구조공단)

Legal Aid Ontario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 개인 및 취약 지역사회에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Legal Aid Ontario의 서비스에는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사,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 및 기타 기관 연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egal Aid Ontario 직원은 여러분의 법률적 문제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주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또한 Legal Aid Ontario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지역사회 법률구조공단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1-800-668-8258
TTY: 1-866-641-8867
www.legalaid.on.ca

Advocacy Centre for the Elderly(ACE - 고령자옹호센터)

ACE는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 클라이언트에 대한 법률 조언 및 법정 대리, 일반인 법률 교육, 법률 개혁 및 지역사회 개발 활동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입니다. ACE는 GTA에 거주하는 만 60 이상의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령자 집단에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토론토 외 지역의 고령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16-598-2656
www.ancelaw.ca

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 (CLEO - 온타리오 지역사회법률교육)

CLEO는 위임장, 노인학대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한 무료 일반인 법률 교육 자료를 만드는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입니다. 이 법률 교육 간행물은 사람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되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법을 설명합니다. CLEO는 법률 조언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416-408-4420
www.cleo.on.ca

ARCH Disability Law Centre(ARCH 장애인법률센터)

이 전문 법률구조 클리닉은 온타리오 주 내 장애인의 평등권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일을 합니다. ARCH 법률 서비스는 절반 이상이 장애인인 선출 자원봉사 이사회에 보고하는 변호사 및 법학 실습생에 의해 제공됩니다.

1-866-482-ARCH (2724)

TTY: 1-866-482-2728

www.archdisabilitylaw.ca

HALCO-HIV & AIDS Legal Clinic Ontario(온타리오 HIV & 에이즈 법률클리닉)

HALCO는 HIV/에이즈 환자 및 보균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법률 클리닉입니다. 간단한 법률 서비스와 아울러, HALCO는 일반인 법률 교육을 제공하며, 법률 개혁 및 지역사회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1-888-705-8889

www.halco.org

Ontario Human Rights Code(온타리오 주 인권법)

Human Rights Code(인권법)는 취업, 주택, 각종 서비스 등에 있어서 온타리오 주 주민에게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합니다. Human Rights Code는 취업, 각종 서비스, 물품, 시설, 주거 시설 수용, 계약, 기술 협회 및 직업 협회 등에 있어서 연령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Ontario Human Rights Code의 연령 차별에 대한 보호는 만 18세 이상(18세 불포함)의 모든 주민에게 적용됩니다.

www.ontario.ca/humanrights

Office of the French Language Services Commissioner (프랑스어서비스위원장실)

이 기관은 프랑스어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French Language Services Act(프랑스어서비스법)가 준수되도록 합니다. 권고안을 제시할 권한이 있는 위원장은 프랑스어 사용 인구에 적합하도록 조정된 정책 및 제도를 진취적으로 수립할 것을 정부 부처 및 기관에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이 기관의 사명은 일반 대중이 온타리오 주정부로부터 질 높은 프랑스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1-866-246-5262
TTY: 416-314-0760
www.ontario.ca/rvk

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and Trustee(OPGT - 공공후견인 겸 신탁관리인실)

이 기관은 특정 개인 및 유산의 법적, 개인적 및 재정적 권익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정신적 무능력자 보호
- 자선단체의 공익 보호
- OPGT 관리 하의 유산에 대한 상속자 찾기
- 지속 보호 기금 투자
- 해체된 주식회사의 처리

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and Trustee는 특정 개인이 정신적으로 무능하여 심각한 재정적 또는 개인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정보가 입수될 경우,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그 개인을 대리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00-366-0335
www.ontario.ca/rvm

위임장

위임장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대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Continuing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재산관리용 지속위임장)는 여러분의 지명대리인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재정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이 권한은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아직 있을 때 사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 본인의 재산에 관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상실했을 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위임장은 본인이 정신적으로 무능할 경우에만 그 지명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General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재산관리용 일반위임장/비지속위임장)는 여러분이 정신적 능력이 있을 경우에만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여러분이 정신적 능력을 상실하면 이 권한이 끝납니다.

Limited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재산관리용 제한위임장)는 여러분의 지명대리인이 특정적으로 제한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있는 재산에만 적용되는 ‘은행위임장’이 포함됩니다. 이 위임장은 특정 기간(예: 본인이 국외에 있을 때) 동안만 적용되거나 특정 재산(예: 매각될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개인간병용 위임장) This Power of Attorney only takes effect if and when you are incapable. 는 여러분이 정신적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여러분의 지명대리인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개인 간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의사결정에는 주거, 안전, 위생, 영양, 의복, 보건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병에 대한 이 위임장을 작성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의료 또는 Long-Term Care Home 입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Health Care Consent Act(보건의료동의법)에 따라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고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and Trustee가 여러분 대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어떤 종류의 치료를 원하는지(또는 원치 않는지) 본인 스스로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 이 위임장은 대리 의사결정자에게 치료의 종류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임장은 본인이 정신적으로 무능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존엄사유언’이란 본인의 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본인이 원하거나 원치 않는 의료에 대한 지시서 또는 소망서를 말합니다. 대리 의사결정자는 ‘Advance Medical Directive (사전의료지시서)’라고 불리기도 하는 존엄사유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지만, 당시 상황에 따라 구속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와는 달리, 존엄사유언은 대리 의사결정자를 지명하지 않습니다.

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and Trustee는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신 의사결정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명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Power of Attorney Kit(위임장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법무부)
1-800-366-0335
www.ontario.ca/rvn

Advance Care Planning(사전간병계획)

Advance Care Planning은 장래에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 때, 여러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의 의사결정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Ontario Seniors' Secretariat은 Alzheimer Society of Ontario와 공조하여, 고령자가 자신의 장래 개인 간병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A Guide to Advance Care Planning(사전간병계획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본 안내서가 필요하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publications.serviceontario.ca.

Seniors' INFOline(고령자 안내전화)
1-888-910-1999
TTY: 1-800-387-5559
www.ontario.ca/seniors

장기 및 조직 기증

나중에 죽으면 장기 및 조직을 기증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가족 및 친구들이 여러분의 소망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존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기증자카드에 서명했다라도 여러분의 동의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증 동의를 등록함으로써, 여러분의 기증 결정이 기록에 남고 적시에 적절한 사람에게 제공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증자 등록 방법:

- 웹사이트 www.beadonor.ca에서 Gift of Life(생명의선물) 동의서를 작성하십시오.
- ServiceOntario Centre를 방문하십시오.
- 웹사이트 www.ontario.ca/health-and-wellness/organ-and-tissue-donor-registration에서 등록하십시오.

ServiceOntario
1-866-532-3161
TTY: 1-800-387-5559

Trillium Gift of Life Network(트릴리엄 생명의선물 네트워크)
1-800-263-2833
www.giftoflife.on.ca

생의 말년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미처 준비할 사이도 없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미리 알아 두면 이 힘겨운 시기가 조금이나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법은 최후의 준비를 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장의사, 이송 서비스 제공자, 묘지 또는 화장장 운영자 등은 소비자가 여러 곳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나서 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물품 및 서비스의 현재 가격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서비스 또는 공급업자를 알선해주고 커미션을 받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법에 의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장례, 매장 또는 화장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 중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선불 계약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금액 전액을 선불했을 경우, 그동안 가격이 인상되었더라도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원할 때 추가 요금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Ministry of Consumer Services
1-800-889-9768
www.ontario.ca/consumerservices

Board of Funeral Services(장례서비스국)
1-800-387-4458
www.funeralboard.com

유언장 및 유산

유언장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여러분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할지 명시한 문서입니다. 유언장은 사망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절세의 기회와 세금 유예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산상속법을 잘 아는 변호사에게 유언장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Will Kit (유언장 키트)'를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키트는 온타리오 주법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Succession Law Reform Act (상속법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서명하고 증인 서명을 하지 않은 유언장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죽었을 때, 유언장이 있는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을 지방법원이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사람도 있고, 대여금고나 집의 옷장에 보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산집행인은 유언장에 명시된 소망을 집행합니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죽었을 경우, 죽은 사람의 유산은 Ontario's Succession Law Reform Act에 따라 분배됩니다. 온타리오 주 주민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죽거나, 유언장은 있지만 유산관리인 역할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Public Guardian and Trustee가 유산을 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또는 유산 상속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1-800-518-7901
TTY: 416-326-4012
www.ontario.ca/rvo

해외 사망

누가 외국에서 죽었을 경우에는 그 나라에 있는 가까운 캐나다 재외공관에 문의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십시오.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 Consular Services
(영사 서비스)
캐나다 내 무료 전화: 1-800-267-6788
캐나다 국외: 613-996-8885 (수신자부담 전화 가능)
TTY: 1-800-394-3472
www.travel.gc.ca/about/assistance/consular/death

사망신고 및 사망증명서

사람이 죽으면 그 주치의 또는 검시관이 Medical Certificate of Death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망자의 시신과 함께 장의사에게 인도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려면 가족 및 장의사가 망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Statement of Death(사망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서의 작성이 끝나면 장의사가 시청 제증명발급과에 제출합니다. 사망신고로부터 수집된 사인 정보는 보건의료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쓰입니다.

장의사는 특정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사망확인서를 발급해주지만, 몇몇 기관은 공식 사망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망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유산 정리
- 보험금 청구
- 각종 정부 서비스 이용/해지
- 족보 검색

ServiceOntario
1-800-267-8097
TTY: 1-800-268-7095
www.ontario.ca/government/death-certificate

연금 및 급여

유산집행인은 다음 기관(망자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연락하여 수혜 자격에 대해 알아보거나 급여, 서비스 또는 상담 예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유산집행인은 또한 망자의 전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회사 연금 및 급여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Old Age Security Program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Canada Pension Plan
1-800-277-9914
TTY: 1-800-255-4786
www.servicecanada.gc.ca

Harmonized Sales Tax Credit
1-800-959-1953
TTY: 1-800-665-0354
www.cra-arc.gc.ca/bnfts/gsthst

Guaranteed Annual Income System
1-866-ONT-TAXS (1-866-668-8297)
TTY: 1-800-263-7776
www.ontario.ca/gains

Veterans Affairs Canada
1-866-522-2122
www.veterans.gc.ca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직장안전보험위원회)
1-800-387-0750
TTY: 1-800-387-0050
www.wsib.on.ca

Ontario Works
www.ontario.ca/rvp

National Defence Disability and Death Benefits(국방부 장애급여 및 사망급여)
1-866-522-2122
www.forces.gc.ca

유족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본 안내서의 '재정' 단원을 참고하십시오.

소득세

유산집행인은 망자의 소득신고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내 세무서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nada Revenue Agency
1-800-959-8281
TTY: 1-800-665-0354
www.cra.gc.ca/cntct/prv/on-eng.html
www.cra-arc.gc.ca/tx/ndvdl/lf-vnts/dth/menu-eng.html

은행 및 신용카드

유산집행인은 망자의 은행, 기타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각종 카드를 취소해야 합니다.

Government Cards and Registries 각종 정부 발급 신분증 및 등록

유산집행인은 망자와 관련이 있는 정부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및 장애인주차증
Ontario Health Card
Outdoors Card
ServiceOntario
1-866-532-3161
TTY: 1-800-268-7095
www.serviceontario.ca

사회보장번호(SIN)
Service Canada
1-800-206-7218
www.servicecanada.gc.ca

캐나다 여권 및 외국 여권
Passport Canada
1-800-567-6868
TTY: 1-866-255-7655
www.ppt.gc.ca

시민권 및 영주권 카드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1-888-242-2100
TTY: 1-888-576-8502
www.cic.gc.ca

Indian Status(인디언 신분증)
Aboriginal Affairs and Northern Development Canada
1-800-567-9604
TTY: 1-866-553-0554
www.aadnc-aandc.gc.ca

총기면허
Canadian Firearms Program(캐나다 총기관리프로그램)
1-800-731-4000
www.rcmp-grc.gc.ca/cfp-pcaf/index-eng.htm

자동차

유산집행인은 자동차, 선박, 스노모빌, ATV, 트레일러 등의 매각 또는 소유권 이전, 보험증권의 취소 또는 양도 문제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www.ontario.ca/smw

부동산

유산집행인이 처리해야 할 수 있는 일:

- 주 거주 주택 및 보조 거주 주택에 대한 부동산 권리증 및 재산세 결정
- 거주지 관할 Canada Post 우체국에 우편물 전송 또는 보관 신청
- 망자의 거주지 관할 공익사업 회사, 케이블 회사, 전화 회사, 전기 회사 등에 연락하여 명의 변경 또는 서비스 취소
- 신문 및 잡지 구독 명의 변경 또는 취소

클럽, 단체, 서비스 기관 및 전문직 협회

또한 다음과 같은 개인 및 단체에도 연락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병사, 보건 서비스 기관
- 각종 여행/상품 상용고객 보상 카드
- 망자가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곳

- 망자가 회원이었던 전문가 단체
- 망자가 졸업한 고등교육기관

재향군인

자격이 있는 재향군인에게는 군대식 비석 등의 장례 및 매장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Veterans Affairs Canada를 대리하여 Last Post Fund (진혼나팔기금)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Last Post Fund - Ontario Branch(온타리오 지부)

1-800-563-2508

www.lastpostfund.ca

8 교통

운전

이동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고령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늙었다고 운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노화에 따르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운전 습관을 바꿉니다.

성숙한 운전자를 위한 교실

고령 운전자는 연령과 관련된 운전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배우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운전 교실 또는 워크숍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운전 전략을 배우는 한편 운전 규칙 및 규정, 충돌 사고의 일반적 원인, 충돌 사고 예방 기술 등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55 Alive Driver Refresher Course(5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재교육 교실)
Canada Safety Council(캐나다 안전협회)
613-739-1535 ext. 233
www.safety-council.org

CAA Mature Operators Workshop(성숙한운전자 워크숍)
Canadian Automobile Club(CAA - 캐나다 자동차클럽) 온타리오 주 중남부
1-800-268-3750
www.caasco.com/drivertraining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은 ServiceOntario Centre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ServiceOntario
1-800-267-8097
TTY: 1-800-268-7095
www.serviceontario.ca

Senior Driver Renewal Program(고령운전자 갱신 프로그램)

만 80세가 되면 운전면허증이 5년이 아닌 2년마다 갱신됩니다. Senior Driver Renewal Program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따릅니다:

- 시력 검사
- 집단 교육 참여
- 도로 및 교통 표지 규칙에 관한 사지선다 시험 응시

Ministry of Transportation(교통부)

1-800-396-4233

TTY: 1-800-268-7095

www.ontario.ca/driving-and-roads/renew-g-drivers-licence-80-years-and-over

운전면허시험장

DriveTest Centre(운전면허시험장)은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에 대한 시력 검사, 필기 시험, 주행 시험 등 각종 운전면허 시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riveTest

1-888-570-6110(자동 전화 예약)

www.drivetest.ca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Ontario Photo Card(온타리오 사진카드)를 신청하여 정부 발급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본 안내서 맨 뒤의 '온타리오 주정부 발급 신분증' 단원을 참고하십시오.

장애인주차증

장애인주차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발급됩니다.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에는 차종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탑승한 자동차가 지정된 장애인용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을 때, 주차증이 눈에 잘 띄도록 하십시오. 장애인주차증을 발급받으려면 이동 능력이 제한되어 있거나, 이동할 때 도움이 필요하거나, 중증 호흡계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휴대용 산소통이 필요하거나, 시력이 나쁘다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의료적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최고 5년간 유효한 영구 장애인주차증 또는 최고 1년간 유효한 임시 장애인주차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rviceOntario

1-800-387-3445

www.ontario.ca/accessibleparking

Home and Vehicle Modification Program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본 안내서의 '재정' 단원을 참고하십시오.

운전의 대안

나이가 든 운전자라면 언젠가는 운전을 제한하거나 아예 운전을 그만두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독립성을 잃고 남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친구, 그리고 주치의에게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전의 대안에 대해 잘 알아보십시오. 운전을 점점 줄이다가 결국 그만두어야 할 때에 대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경고 징후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안전 운전자가 아닐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잘 살펴보아야 할 몇 가지 징후입니다:

- 운전대를 잡으면 불안합니까?
- 다른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 경미한 접촉 사고 및 아슬아슬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까?
-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의 운전에 대해 걱정합니까?
- 자녀가 여러분에게 운전을 맡깁니까?
- 여러분이 손자/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을 자녀가 허락합니까?
- 운전 중에 길을 잃거나 목적지를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대안

운전의 대안은 많습니다. 다음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옵션입니다:

- 버스, 택시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
- 친구 또는 가족에게 운전 맡기기
-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운전해주는 자동차를 보유하기
- 고령자 전용 주택 및 기타 집단에서 일정한 운행시간표 또는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밴/버스 픽업 서비스
- 선불 택시 승차권
- 걷기
- 거주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운전자 서비스

고령자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내 단체를 찾아보려면 2-1-1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www.211ontario.ca를 방문하십시오.

자동차 매매

Used Vehicle Information Package(UVIP - 중고자동차정보 패키지)

온타리오 주에서는 매년 백만여 대의 중고 자동차가 거래됩니다. 구매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판매자는 UVIP를 제공해야 합니다. UVIP는 ServiceOntario Driver and Vehicle Licence Issuing Office(운전자및자동차면허발급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ServiceOntario
1-800-387-3445
www.ontario.ca/UsedVehicle

대중교통

많은 지역사회가 버스 서비스 및 특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토론토의 Wheel-Trans(휠트랜스), 오타와의 Para Transpo(파라트랜스포), 윈저 Handi-Transit(핸디트랜짓) 등의 특수 대중교통 서비스는 휠체어, 스쿠터 등의 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승강기 또는 경사로나 장치가 된 소형 차량을 사용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된 버스를 고정 노선 및 신축 노선에 운행하는 지역사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사회 내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2-1-1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www.211ontario.ca를 방문하십시오.

자원봉사 운전자

Red Cross(적십자), 거주지 관내 Royal Canadian Legion 지부 또는 Older Adult Centre를 통해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도 자원봉사 운전자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GO Transit(고트랜짓)

GO Transit은 GTA 및 해밀턴에서 운행되는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로서 노선이 골든호스슈광역권 전역에 걸쳐 여러 지역사회에 뻗어 있습니다. GO Transit 요금은 여행 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정규 성인 요금의 절반에 상당하는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는 1회용 승차권 및 일일 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GO 정류장은 이동기구를 사용하거나 계단 없는 접근을 선호하는 승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888-GETONGO (438-6646)
TTY: 1-800-387-3652
www.gotransit.com

재향군인

재향군인용 그래픽 번호판

이 번호판은 Royal Canadian Legion에 의해 복무 기록이 확인된 적격 재향군인에게 제공됩니다. Veteran Plate Eligibility Certification (재향군인용번호판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ServiceOntario 센터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 www.ontario.ca/customplates를 방문하십시오.

Royal Canadian Legion - Ontario Provincial Command
905-841-7999
www.on.legion.ca

9 주요 연락처

온타리오 주정부

Seniors' INFOline
1-888-910-1999
TTY: 1-800-387-5559

고령자를 위한 각종 온타리오 주정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각종 간행물을 요청하려면 Seniors' INFOline에 문의하십시오.

ServiceOntario
1-800-267-8097
TTY: 1-800-268-7095
www.serviceontario.ca

ServiceOntario는 한 곳에서 다양한 온타리오 주정부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전화, 또는 ServiceOntario 센터 방문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ServiceOntario Publications
1-800-668-9938
TTY: 1-800-268-7095
www.publications.serviceontario.ca

온타리오 주정부 간행물을 주문하려면 ServiceOntario Publications에 문의하십시오.

Community Care Access Centre (CCAC)
310-CCAC (310-2222)
www.310CCAC.ca

여러분의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는 각종 가정 및 지역사회 간병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CCAC에 문의하십시오.

Telehealth Ontario
1-866-797-0000
TTY: 1-866-797-0007

Telehealth Ontario에 전화하면 비밀리에 제공되는 보건 관련 조언을 받고 일반 보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여러 언어로 제공됩니다.

Victim Support Line(피해자지원전화)
1-888-579-2888

Victim Support Line은 온타리오 주 전역의 범죄 피해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중언어 무료 안내 전화입니다.

Emergency Management Ontario
1-888-795-7635

비상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Emergency Management Ontario에 문의하십시오.

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and Trustee
1-800-366-0335

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and Trustee는 특정 개인 및 유산의 법적, 개인적 및 재정적 권익을 보호합니다.

Ombudsman Ontario(온타리오 옴부즈맨)
1-800-263-1830
TTY: 1-866-411-4211 |

Ombudsman Ontario는 각종 주정부 서비스에 대한 민원을 수리하여 되도록 빨리 해결해줍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Service Canada
1-800-0-Canada
(1-800-622-6232)
TTY: 1-800-926-9105
www.servicecanada.gc.ca

Pension Programs(연금 제도) - Service Canada
1-800-277-9914
TTY: 1-800-255-4786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Service Canada에 문의하십시오.

지방정부

211 Ontario
www.211ontario.ca

여러분의 거주지 내에서 제공되는 각종 지역사회 서비스 및 사회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2-1-1로 전화하십시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150여 개 언어로 비밀리에 제공됩니다.

Association of Municipalities of Ontario(AMO - 온타리오 주 지방자치체협회)
www.yourlocalgovernment.com

고령자 서비스, 보건 프로그램, 주거 서비스, 여가활동,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 지원 등, 여러분의 거주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지방자치체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ssociation of Municipalities of Ontario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지역사회 안전

경찰, 소방 또는 앰بول런스 지원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9-1-1로 신고하십시오.

Crime Stoppers(크라임 스토퍼스)
1-800-222-TIPS (8477)
www.canadiancrimestoppers.org

Crime Stoppers에 전화하여 범죄 또는 잠재적 범죄에 관한 정보를 익명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The Canadian Anti-Fraud 콜센터
1-888-495-8501
www.antifraudcentre.ca

사기 사건을 신고하거나 사기 예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Canadian Anti-Fraud Call Centre로 전화하십시오.

10 온타리오 주정부 발급 신분증

Ontario Photo Card(온타리오 사진카드)

지갑 크기의 이 카드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온타리오 주 주민에게 신분증 구실을 합니다. 여행 같은 활동을 하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공식 신분증을 요하는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ntario Photo Card를 신청하려면 만 16세 이상의 온타리오 주 주민으로서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ontario.ca/photocard.

운전면허증

온타리오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를 운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해줍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항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지갑 크기의 이 카드에는 디지털 사진 및 서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ontario.ca/driving-and-roads/drivers-licence.

개량운전면허증

개량운전면허증은 육로 또는 수로로 캐나다-미국 사이를 여행할 때 여행문서 구실을 합니다.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ontario.ca/driving-and-roads/enhanced-drivers-licence.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OHIP) 의료보험카드

온타리오 주 주민은 OHIP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유효한 의료보험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보험카드가 유효한 것이고 본인의 것일 경우, 사진이 있는 의료보험카드 또는 적색/백색 의료보험카드를 제시하면 OHIP가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카드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카드를 보여주거나 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Ministry of Health and Long-Term Care에 의료보험카드를 제시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ontario.ca/healthcard.

정부 발급 신분증에 관한 일반 정보:

ServiceOntario

1-800-267-8097

TTY: 1-800-268-7095

www.serviceontario.ca

주소 변경

온타리오 주의 통합 온라인 주소 변경 시스템은 빠르고 쉽게 정부에 주소 변경을 통지하는 방법입니다. 주소 변경 정보는 한 번만 입력할 수 있으며, 변경 사실을 통지할 정부 부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의료보험카드, Outdoors Card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이사하기 전에 주소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ontario.ca/home-and-community/change-your-address.

11 색인

9-1-1 65

A

Aboriginal Artists in Schools(원주민 예술가의 학교교육 참여)	12
Accessible Parking Permit(장애인주차증)	80
Adult Day Programs(성인 주간활동 프로그램)	43
Adult Lifestyle Communities(성인 생활양식 공동체)	50
Advance Care Planning(사전간병계획)	72
Advocacy Centre for the Elderly(고령자옹호센터)	68
Alternatives to Driving(운전의 대안)	81
Ambulance Services(앰불런스 서비스)	37
ARCH Disability Law Centre(ARCH 장애인법률센터)	69
Assisted Living Program for Aboriginals(원주민을 위한생활보조 프로그램)	55
Awards Honouring Seniors(고령자 표창)	10

B

Benevolent Funds(자선기금)	26
Bone Mineral Density Testing(골밀도 검사)	30
Bureau of Pensions Advocates(연금변호단)	25

C

Canada Pension Plan Retirement Pension(캐나다 연금계획 퇴직연금)	22
Disability Benefits(장애급여)	22
Survivor Benefits(유족급여)	22
International Benefits(국제급여)	23
Pension Sharing(연금 공유)	23
Canadian Anti-Fraud Centre(캐나다 사기방지센터)	64
Canadian Mental Health Association Ontario(온타리오 주 캐나다 정신건강협회)	39
Canadian Snowbird Association(캐나다 피한객협회)	4
Caregiver Respite(간병인 휴식)	43
Centre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중독및정신건강센터)	39
Client Intervention Services(클라이언트 원조 서비스)	44
ColonCancerCheck(대장암 검진)	29
Community Care Access Centre(지역사회 보건서비스 센터)	27
Community Homelessness Prevention Initiative(지역사회 노숙방지계획)	53
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온타리오 지역사회법률교육)	68

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 (지역사회 자원봉사 소득세 프로그램)	19
Compassionate Care Benefit Program(가족간병급여 프로그램)	16
Complex Continuing Care(복합지속치료)	45
Computer Training(컴퓨터 교육)	7
Congratulatory Messages(치하 메시지)	8
ConnexOntario(커넥스 온타리오)	39
Continuing and Distance Educations(평생교육 및 원격교육)	7
Contracts(계약)	61
Co-operative Housing(조합주택)	53
Courses for Mature Drivers(성숙한 운전자 교실)	79

D

Death Out of Country(해외 사망)	74
Death Registration and Certificate(사망신고 및 사망증명서)	74
Diabetes(당뇨병)	29
Diabetic Testing Agents(당뇨병 검사약)	35
Dietitians of Canada(캐나다 영양사협회)	42
Disability Pensions and Awards for Veterans(재향군인 장애연금 및 포상)	25
Driver Examination Centres(운전면허시험장)	80
Driver's Licence(운전면허증)	87
Driver's Licence Renewal(운전면허증 갱신)	79

E

Eating Well with Canada's Food Guide(캐나다 식품 가이드에 따른 바른 식생활)	42
EatRight Ontario(온타리오 바른 식생활)	41
Elder Abuse(노인학대)	65
Elder and Youth Legacy Program(원로 및 청소년 문화유산 프로그램)	12
Emergency Preparedness(비상 대비)	65
Emergency Response Service(비상대응 서비스)	44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고용보험 급여)	23
Employment Ontario(온타리오 고용)	5
Employment Standards Act(고용기준법)	6
Enhanced Driver's Licence(개량운전면허증)	87

F

Family Councils(가족협의회)	60
Family Medical Leave(가족의료휴가)	16
Filing Your Tax Return(소득신고)	18
Finding a Health Care Provider(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찾기)	28

Fire Safety(화재안전)	66
Fishing and Hunting(낚시 및 사냥)	3
Foot Care Services(발 관리 서비스)	44
Foreign Trained Professionals(해외에서 훈련받은 전문직종자)	6
Frauds and Scams(사기/사취)	63
Friendly Visiting(우정의 방문)	44

G

Gift Cards(상품권카드)	63
GO Transit(고트랜짓)	82
Guaranteed Annual Income System(연소득보장제도)	22

H

HALCO - HIV & AIDS Legal Clinic(온타리오 HIV & 에이즈 법률클리닉)	69
Healthy Homes Renovation Tax Credit(주택개조세금공제)	48
HIV Treatment(에이즈 치료)	31
Home and Vehicle Modification Program(주택 및 자동차 개조 프로그램)	25
Home Help Referral Services(가정도우미 알선 서비스)	44
Home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주택 유지관리 및 보수 서비스)	44

I

Identity Theft(신원도용)	62
Immunizations(예방접종)	31
Independent Learning Centre(독립학습센터)	7
Inpatient and Outpatient Services at Hospitals (병원의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서비스)	38
Inspections(감사)	59
Investment in Affordable Housing for Ontario (온타리오 주 서민주택투자 프로그램)	52

L

Landlord and Tenant Board(임대주세입자위원회)	54
Last Post Fund(진혼나팔기금)	78
Law Society Referral Service(법률협회 알선 서비스)	67
Learning About Taxes Course(세금 공부 교실)	19
Learning English or French(영어/프랑스어 배우기)	11
Legal Aid Ontario(온타리오 법률구조공단)	68
Life Lease Housing(평생임대주택)	50

Lifelong Learning Plan(평생교육계획)	24
Long-Term Care Home Reports(장기요양원 보고서)	59

M

Meal Services(급식 서비스)	45
MedsCheck(메즈체크)	34
Meeting Your Legal Needs(법률 관련 필요의 충족)	67
Military-Style Grave Markers(군대식 비석)	78
Ministry of Aboriginal Affairs - Housing Resources (원주민문제부 - 주택 자원)	54

N

National Aboriginal Diabetes Program(전국 원주민 당뇨병 프로그램)	46
Newcomer Settlement Program(신규이민자 정착 프로그램)	11
Non-Insured Health Benefits for First Nations and Inuit (원주민 및 이누이트 족 비보험 보건급여)	46

O

Office of the French Language Services Commissioner (프랑스어서비스위원장실)	69
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and Trustee(공공후견인 겸 신탁관리인실)	70
Old Age Security Pension(고령보장연금)	21
Allowance and Allowance for the Survivor(배우자수당 및 유족수당)	21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소득보장보조금)	21
Older Adult Centres(고령자 센터)	1
Ontario Association of Residents' Councils(온타리오 주 입원자협의회연합)	59
Ontario Health Card(온타리오 의료보험카드)	32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OHIP) Health Card ID (온타리오 의료보험계획(OHIP) 의료보험카드 신분증)	87
Ontario Human Rights Code(온타리오 주 인권법)	69
Ontario Immigration Portal(온타리오 이민 포털)	11
Ontario Job Bank(온타리오 직업은행)	6
Ontario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온타리오 노인학대방지 네트워크)	66
Ontario Parks(온타리오 공원관리국)	2
Ontario Photo Card(온타리오 사진카드)	87
Ontario Renovates(온타리오 개량)	49
Ontario Senior Games(온타리오 고령자체전)	2
Ontario Skills Passport(온타리오 기술 패스포트)	6
Ontario Volunteer Centre Network(온타리오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	8
Ontario WorkinfoNet (OnWIN) (온타리오 직업정보망)	6

Ontario Works(온타리오 워크스)	24
Organ and Tissue Donation (장기 및 조직 기증)	72

P

Palliative Care(완화치료)	45
Pensions and Benefits(연금 및 급여)	75
Personal Emergency Leave(개인비상휴가)	17
Phishing(피싱)	63
Power of Attorney(위임장)	70
Property Tax Relief for Low-Income Seniors and Low-Income Persons with Disabilities(저소득 고령자 및 저소득 장애인 재산세 감면)	49
Provincial Land Tax Deferral Program for Low-Income Seniors and Low-Income Persons with Disabilities (저소득 고령자 및 저소득 장애인 재산세 감면)	50
Provincial Tax Credits and Benefits(온타리오 주 세금공제 및 급여)	19
Public Health Units(공공보건국)	28
Public Libraries(공공도서관)	1

R

Rainbow Health Ontario(온타리오 레인보우 보건)	47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and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공인퇴직금적립계획 및 공인퇴직소득기금)	24
Rent-Geared-To-Income Housing(소득비례집세 주택)	52
Residential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gram On-Reserve (보호구역 내 주거 재건 지원 프로그램)	54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주택임차법 2006)	54
Residents' Rights(입원자 권리)	58
Retirement Abroad(해외 은퇴)	4
Retirement Homes(고령자전용주택)	51
Royal Canadian Legion(왕립 캐나다 재향군인회)	13

S

Security Checks or Reassurance Services(안전 점검/확인 서비스)	45
Senior and/or Disabled Property Tax Relief(고령자 및 장애인 재산세 감면)	49
Senior Driver Renewal Program(고령운전자 갱신 프로그램)	79
Senior Pride Network(고령자 자부심 네트워크)	13
Settlement.Org	11
Short-Stay Accommodation(단기 입원)	57
Smoking Cessation(담배 끊기)	40

Social or Recreational Services(사회 서비스/여가활동 서비스)	45
Soldiers' Aid Commission of Ontario(온타리오 주 군인원조위원회)	26
Specialized Geriatric Mental Health Outreach Programs (전문화된 노인정신건강 홍보 프로그램)	38
Substance Abuse and Treatment for Aboriginals(원주민 약물남용 치료)	46
Supportive Housing(고령자생활보조주택)	52

T

Tax-Free Savings Account(면세저축예금계좌)	24
Telehealth Ontario(텔레헬스 온타리오)	27
The 519 Church Street Community Centre (처치스트리트 519번지 커뮤니티 센터)	13
The Memory Project(기억 프로젝트)	14
Third Age Network(제3기 네트워크)	7
Transportation Services(교통 서비스)	45
Travelling in Ontario(온타리오 주 내 여행)	3
Travelling Outside Ontario or Canada(온타리오 주 외 또는 캐나다 국외 여행)	3

U

Used Vehicle Information Package(중고자동차정보 패키지)	82
---	----

V

Veteran Graphic Licence Plate(재향군인용 그래픽 번호판)	83
Veterans Independence Program(재향군인독립 프로그램)	47
Volunteer Canada(캐나다 자원봉사)	8
Volunteer Drivers(자원봉사 운전자)	82

W

War Veterans Allowance(참전용사수당)	25
Wills and Estates (유언장 및 상속)	73